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집

2015. 3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집

2015. 3.

목 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별지 서식	21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	239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241
●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289
● 도시공원 ·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27
● 도시공원 ·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355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65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변경 등에 관한 지침	38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목 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2	제1조(목적) 12	제1조(목적) 12
제2조(정의) 12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12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14
제3조(시범사업) 18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18	
제4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21	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21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22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22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 24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24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24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6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6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 28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30	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28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제11조(도시녹화계획) 31 제12조(녹지활용계약) 32 제13조(녹화계약) 35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 37	제9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31 제10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 32 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35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37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37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38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41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42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42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46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제7조 삭제 46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 4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48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49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 49	
제17조(도시공원결정의 실효) 51	제14조(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51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51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51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52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52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53
		제10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58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61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70	제16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 70	제12조(공고방법) 70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73	제17조(업무대행결과의 보고) 72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대한 특례) 75	제18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관리인가의 신청) ... 73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80		
제23조(겸용공작물의 관리) 80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80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8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3 제25조(원상회복) 100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80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83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84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 88 제24조(매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99	제14조(점용허가신청서) 83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101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03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101 제26조(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103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13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114	제15조(허가신청서 등) 1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124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127 제3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129 제31조(비용의 부담) 132 제32조(협약에 의한 토지의 매수) ... 134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135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136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115 제30조(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 116 제3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 123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124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높이 등에 관한 특례) 126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127 제35조(매수기한) 129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129 제37조(매수절차) 130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132 제39조(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134	제16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124 제17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1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p> <p>제35조(녹지의 세분) 136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137 제37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144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147</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비 용</p> <p>제39조(비용부담) 151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153 제41조(점용료의 징수) 154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155</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p> <p>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144 제41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 147 제42조(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148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148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150</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비 용</p> <p>제45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관 리비) 151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153</p>	<p>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 137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44 제20조(점용허가신청서) 147</p> <p>제21조 삭제 153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153</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155		
제44조(비용보조) 156	제47조(비용보조) 156	
제8장 감 독	제8장 감 독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56	제48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156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157	제49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157	
제47조(청문) 159		
제9장 보 칙	제9장 보 칙	
제48조(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160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시 고려사항 등) 161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162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62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164	제50조의2(규제의 제검토) 164	
제51조(도시공원 대장) 165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165
제52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 16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166		
제10장 벌 칩	제10장 벌 칩	
제53조(벌칙) 171		
제54조(벌칙) 172		
제55조(양벌규정) 173		
제56조(과태료) 174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74	제24조(규제의 재검토) 174
부 칩 176	부 칩 176	부 칩 17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5.1.20]</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051호, 2015. 1.20, 일부개정]</p> <p>전부개정 법률 제 7476 호, 2005. 3.31. 타법개정 법률 제 8852 호, 2008. 2.29. 일부개정 법률 제 9860 호, 2009.12.29. 제10264호, 2010. 4.15. 타법개정 법률 제10599호, 2011. 4.1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법률 제11060호, 2011. 9.16. 타법개정 법률 제11581호, 2012.12.18. 법률 제11690호, 2013. 3.23. 일부개정 법률 제11800호, 2013. 5.22. 법률 제12977호, 2015. 1. 6. 법률 제13051호, 2015. 1.20.</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5.2.10]</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095호, 2015. 2.10, 일부개정]</p> <p>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9173호, 2005.12. 9. 대통령령 제19512호, 2006. 6.12.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16.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965호, 2009.12.31.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39호, 2010. 6.29. 대통령령 제22451호, 2010.10.14. 대통령령 제23234호, 2011.10.19.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 8.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668호, 2012. 3.13.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10.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23.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79호, 2013.11.22.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24.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585호, 2014. 9. 2. 대통령령 제25663호, 2014.10.22.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 9.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095호, 2015. 2.10.</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5.2.12]</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부령 제184호, 2015.2.12, 일부개정]</p> <p>전부개정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2005.12.30 타법개정 건설교통부령 제584호, 2007.10.15 국토해양부령 제 4 호, 2008. 3.1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 67호, 2008.11.10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제110호, 2009. 3.26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193호, 2009.12.15 국토해양부령 제208호, 2010. 1.11 국토해양부령 제257호,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91호, 2010.10. 8 국토해양부령 제378호, 2011. 8.3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제550호, 2012.12.11 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 3.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 39 호, 2013.11.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 54 호, 2013.12.30.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 7.15.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2호, 2014.10.22. 국토교통부령 제184호, 2015. 2.12.</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2.></p> <p>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p> <p>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11., 2013.3.23.></p> <p>1.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p> <p>2. 옥상녹화·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p> <p>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p> <p>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p> <p>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p>		<p>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p> <p>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 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p> <p>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로 또는 광장</p> <p>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p> <p>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p> <p>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p> <p>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 시설</p>		<p>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p> <p>[전문개정 2013.11.22.]</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p> <p>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p> <p>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p> <p>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p> <p>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p> <p>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p>		<p>【별표 1】 <개정 2015.2.12.>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447 363 2049 1391"> <thead> <tr> <th data-bbox="1447 370 1608 411">공원시설</th> <th data-bbox="1617 370 2049 411">종 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447 418 1608 577">1. 조경시설</td> <td data-bbox="1617 418 2049 577">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td> </tr> <tr> <td data-bbox="1447 584 1608 817">2. 휴양시설</td> <td data-bbox="1617 584 2049 817">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경로당, 노인복지관</td> </tr> <tr> <td data-bbox="1447 823 1608 1104">3. 유희시설</td> <td data-bbox="1617 823 2049 1104">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td> </tr> <tr> <td data-bbox="1447 1110 1608 1385">4. 운동시설</td> <td data-bbox="1617 1110 2049 1385">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td> </tr> </tbody> </table>	공원시설	종 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3. 유희시설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4. 운동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공원시설	종 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3. 유희시설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4. 운동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9.16.]</p>		<p>5. 교양시설</p> <p>나. 자연체험장</p> <p>도서관,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미술관, 과학관,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청소연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학생기숙사(「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로 한정한다),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한다),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 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전시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생태학습원(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포함한다), 민속놀이마당, 정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향양을 위한 시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6. 편의시설</p> <p>가. 우체통·공중전화실·휴게음식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일반음식점·약국·수화물예치소·전망대·시계탑·음수장·제과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제과점을 포함한다)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p> <p>나. 유스호스텔</p> <p>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p> <p>7. 공원관리 시설</p> <p>창고·차고·계시관·표지·조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쓰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 우물, 태양에너지설비(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p> <p>8. 도시농업 시설</p> <p>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온상·퇴비장, 관수 및 급수 시설, 세면장,</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p>	<p>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p>	<p>농기구 세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p> <p>9. 그 밖의 시설</p> <p>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p> <p>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p> <p>다. 동물놀이터</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공원녹지의 확충 또는 공원녹지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 2.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2.> 1. 시범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역서</p> <p>4.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제14호의2에서 같다)의 심의 결과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p> <p>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⑤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내용·지정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 여부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1.9.16.]</p>	<p>정 2008.2.29., 2013.3.23.></p> <p>⑥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①법 제4조제4호에서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관리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p> <p>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p> <p>②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p> <p>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4.10.></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도시·군 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의 훼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복구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p> <p>3. 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9.16.]</p> <p>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p>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 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4.14.></p> <p>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16.]</p>	<p>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녹지의 보전·확충·관리·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자연·인문·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3.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4. 체계적·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p>	<p>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p> <p>6.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p> <p>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3.13.></p> <p>1. 경관 및 방재</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 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정하여야 한다.</p> <p>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p> <p>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p> <p>3. 지형·생태자원·지질·토양·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p> <p>4. 그 밖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조사 또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정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p> <p>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에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언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p>	<p>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①제4조</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제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p>	<p>에 따른 시의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29., 2012.3.13., 2014.9.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결과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군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 시·군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제14호의2에서 같다)의 자문 결과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을 포함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p> <p>①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p> <p>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p>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p> <p>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29., 2013.3.23.></p> <p>③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9.16.]</p> <p>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 · 녹지의 확충</p> <p>제11조(도시녹화계획)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p> <p>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 · 녹지의 확충</p> <p>제9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4.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군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12조(녹지활용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p>	<p>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제시하도록 할 것</p> <p>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p> <p>제10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4.10.></p> <p>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지역 여건에 맞게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p> <p>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p> <p>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 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p> <p>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 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 다. <개정 2012.3.13., 2012.4.10.></p> <p>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소유자·면적 및 지목 등 을 포함한다)</p> <p>2.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 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p> <p>3.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p> <p>4.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p> <p>5.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 한 사항</p> <p>6. 녹지활용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p> <p>7.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녹화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p> <p>1. 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p>	<p>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p> <p>8.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p> <p>9.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p> <p>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p> <p>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p> <p>②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p> <p>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p> <p>3.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p> <p>②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p>	<p>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p>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0.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p>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p> <p>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p> <p>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p> <p>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p> <p>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상업·공업용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p> <p>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p> <p>③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p> <p>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8.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9.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p> <p>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별표 2】 <개정 2010.6.30>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제5조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447 411 2049 1369"> <thead> <tr> <th data-bbox="1447 411 1639 491">개발계획 \ 기준</th> <th data-bbox="1648 411 2049 491">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447 497 1639 1040">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td> <td data-bbox="1648 497 2049 1040"> <p>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td> </tr> <tr> <td data-bbox="1447 1046 1639 1200">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td> <td data-bbox="1648 1046 2049 1200">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td> </tr> <tr> <td data-bbox="1447 1206 1639 1359">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td> <td data-bbox="1648 1206 2049 1359">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td> </tr> </tbody> </table>	개발계획 \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p>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개발계획 \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p>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p> <p>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p> <p>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p> <p>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p> <p>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p> <p>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가 아닌 토지로서 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임야 또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자연적 녹지"라 한다)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그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p>	7.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적 녹지로서 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토지</p> <p>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적 녹지</p> <p>[전문개정 2011.9.16.]</p> <p>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p> <p>1.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p> <p>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p>		<p>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오락, 재해방지·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p> <p>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p> <p>2.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p> <p>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p> <p>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p> <p>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p>		<p>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p> <p>④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p> <p>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 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p> <p>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p> <p>사.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p> <p>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p> <p>【별표 3】 <개정 2013.11.2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447 721 2054 1385"> <thead> <tr> <th>공원구분</th> <th>설치기준</th> <th>유치거리</th> <th>규모</th> </tr> </thead> <tbody> <tr> <td>1. 생활권 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가. 소공원</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r> <tr> <td>나. 어린이공원</td> <td>제한 없음</td> <td>250미터 이하</td> <td>1천5백 제곱미터 이상</td> </tr> <tr> <td>다. 근린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td> <td>제한 없음</td> <td>500미터 이하</td> <td>1만제곱미터 이상</td> </tr> <tr> <td>(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td> <td>제한 없음</td> <td>1천미터 이하</td> <td>3만제곱미터 이상</td> </tr> </tbody> </table>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5백 제곱미터 이상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5백 제곱미터 이상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9.16.]		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4) 광역권 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p>		<p>시 가 화 가 예 상 되 지 아 니 하 는 자 연 녹 지 지 역 에 설 치</p>			
		<p>마. 체육공원</p>	<p>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p>	<p>제한 없음</p>	<p>1만제곱미터 이상</p>
		<p>바. 도시농업공원</p>	<p>제한 없음</p>	<p>제한 없음</p>	<p>1만제곱미터 이상</p>
		<p>사.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p>	<p>제한 없음</p>	<p>제한 없음</p>	<p>제한 없음</p>
		<p>제7조 삭제 <2009.12.15.></p>			
		<p>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p>		<p>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예방,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p> <p>④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1.9.16.]</p>	<p>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6.29.]</p>	<p>마.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p> <p>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p> <p>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같음한다. <개정 2011.4.14.></p> <p>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p>	<p>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p> <p>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9.16.]</p>	<p>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0.6.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p> <p>[전문개정 2011.9.16.]</p> <p>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p>	<p>제14조(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p> <p>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개정 2012.3.13.></p> <p>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범위, 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공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9.16.]</p> <p>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p> <p>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p>	<p>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p> <p>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p> <p>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p>	<p>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2. 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p>		<p>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 [본조신설 2010.6.30.]</p> <p>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0.10.8., 2012.12.11., 2013.11.22., 2015.2.12.></p> <p>1.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p> <p>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9.16.]</p>		<p>전화실에 한할 것</p> <p>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하며,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경로당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2005년 12월 30일을 말한다)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은 재축·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p> <p>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p> <p>6.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자원의 보호·관람·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로 할 것</p> <p>7.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문화자원의 보호·관람·이용·안내를</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할 것</p> <p>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운동시설·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p> <p>9.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p> <p>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유희시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운동시설·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으로 한정한다) 및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11. 도시농업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농업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할 것</p> <p>12.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로 할 것</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p> <p>③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①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0.6.30., 2012.12.11.></p> <p>1. 설치안전기준</p> <p>가.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할 것</p> <p>나.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고, 이용 동선·유희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추락공간 및 여유허 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p> <p>2. 관리안전기준</p> <p>가. 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p> <p>나. 유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초기점검·일상점검·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형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희시설의 사용제한·보수 등의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록 할 것</p> <p>다. 유흥시설의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하여 유흥시설의 이용 실태를 근거로 마련된 안전확보 대책,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 등과 공원이용자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 등을 실시할 것</p> <p>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2.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배치할 것</p> <p>4. 도시공원이 공적인 장소임을 도시공원 이용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p> <p>5. 도시공원의 설치·운영 시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사용할 것</p> <p>③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시설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제목개정 2012.12.11.]</p> <p>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 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 율에 적합할 것</p> <p>2.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 원시설 부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일 것</p> <p>3.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p> <p>【별표 4】 <개정 2013.11.22></p> <p><u>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u></p> <table border="1" data-bbox="1447 884 2054 1369"> <thead> <tr> <th>공원구분</th> <th>공원면적</th> <th>공원시설 부지면적</th> </tr> </thead> <tbody> <tr> <td>1. 생활권 공원</td> <td></td> <td></td> </tr> <tr> <td>가. 소공원</td> <td>전부 해당</td> <td>100분의 20이하</td> </tr> <tr> <td>나. 어린이공원</td> <td>전부 해당</td> <td>100분의 60이하</td> </tr> <tr> <td rowspan="3">다. 근린공원</td> <td>(1) 3만제곱미터 미만</td> <td>100분의 40이하</td> </tr> <tr> <td>(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 미터 미만</td> <td>100분의 40이하</td> </tr> <tr> <td>(3) 10만제곱미터 이상</td> <td>100분의 40이하</td> </tr> </tbody> </table>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 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 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나. 문화공원 다. 수변공원 라. 묘지공원 마. 체육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사.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table border="1"> <tr> <td>전부 해당</td> <td>제한 없음</td> </tr> <tr> <td>전부 해당</td> <td>제한 없음</td> </tr> <tr> <td>전부 해당</td> <td>100분의 40이하</td> </tr> <tr> <td>전부 해당</td> <td>100분의 20이상</td> </tr> <tr> <td>(1) 3만제곱미터 미만</td> <td>100분의 50이하</td> </tr> <tr> <td>(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td> <td>100분의 50이하</td> </tr> <tr> <td>(3) 10만제곱미터 이상</td> <td>100분의 50이하</td> </tr> <tr> <td>전부 해당</td> <td>100분의 40 이하</td> </tr> <tr> <td>전부 해당</td> <td>제한 없음</td> </tr> </table>	전부 해당	제한 없음	전부 해당	제한 없음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전부 해당	100분의 40 이하	전부 해당	제한 없음
전부 해당	제한 없음																				
전부 해당	제한 없음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전부 해당	100분의 40 이하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비고 : 바목에 따른 도시농업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도시텃밭의 면적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2.12.11., 2013.11.22., 2015.2.12.>																			
		1.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p> <p>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p> <p>2. 편의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p> <p>3. 편의시설 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p> <p>4. 다음 각 목의 편의시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p> <p>가.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p> <p>나.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p> <p>5.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p> <p>6. 운동시설 중 골프장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p> <p>7.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할 수 있다.</p> <p>8.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p> <p>9.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p> <p>10. 교양시설 중 학생기숙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교지(校地)에 있거나 교지에</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달아 있을 것</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p> <p>다. 2012년 12월 12일 현재 가목에 따른 대학의 설립·경영자(국립대학 법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중 학생기숙사를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을 것</p> <p>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p> <p>③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어린이집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2015.2.12.></p> <p>⑥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⑦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11.10.></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⑧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0., 2009.7.1.></p> <p>⑨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1.10.></p> <p>【별표 5】 <개정 2015.2.12.></p> <p>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444 774 2049 1380"> <tr> <td data-bbox="1444 774 1668 1189">1. 위치 및 경관</td> <td data-bbox="1668 774 2049 1189"> 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다. 철로 만든 높은 기둥과 그 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td> </tr> <tr> <td data-bbox="1444 1189 1668 1380">2. 주변지역의 피해방지</td> <td data-bbox="1668 1189 2049 1380"> 가.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td> </tr> </table>	1. 위치 및 경관	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다. 철로 만든 높은 기둥과 그 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가.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위치 및 경관	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다. 철로 만든 높은 기둥과 그 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가.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p>	<p>제16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①법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p>	<p>3. 설치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수</p> <p>나. 골프연습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것</p> <p>가.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하되,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p> <p>나. 하나의 공원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 또는 구에 속한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p> <p>다. 제11조제2항제7호 단서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실내 골프연습장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연습장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2조(광고방법)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 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p><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11.9.16.]</p>	<p>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도로·상하수도·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공작물 등(이하 "다른공작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로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13.></p> <p>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및 공고</p>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p> <p>1.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2.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p> <p>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17조(업무대행결과의 보고) ①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대상기관이나 협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협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공작물의 명칭 및 위치 3. 협의내용과 그 공고연월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p> <p>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p>	<p>②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도시공원대장의 부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공원대장의 작성연월일과 작성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대장의 보관방법·보관장소, 보관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p>제18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관리인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2.4.10.></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의2제6항에서 같다)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신설</p>	<p>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p> <p>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주체·관리방법·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p> <p>[제목개정 2010.6.29.]</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2.12.18., 2015.1.20.> [전문개정 2011.9.16.]</p> <p>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 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 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p> <p>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p> <p>③ 제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p> <p>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p> <p>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p> <p>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0.></p> <p>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p> <p>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p> <p>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p> <p>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채납의 시기 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p>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전문개정 2011.9.16.]</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23조(겸용 공작물의 관리) 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도로·상하수도·저류시설(貯留施設), 그 밖의 시설·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작물"이란 저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3.13.></p> <p>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p>	<p>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별표 6】 <개정 2011.8.31> <u>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u>(제13조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自然流下)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p> <p>④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겸용하는 다른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16.]</p>	<p>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p> <p>2. 공사시행계획서</p> <p>3. 원상회복계획서</p> <p>②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삭제 <2011.8.31></p> <p>나. 붕괴위험지역 및 경사가 심한 지역</p> <p>다.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p> <p>라.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p> <p>3. 저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한다.</p> <p>4.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해당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수변공간조성 및 공원시설과의 겸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의 저수지를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공원시설 중 조경시설과 상시저류시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해당저류시설부지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고 강우시에는 저류지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60퍼센트 이상, 일시저류시설(평상시에는 건조상태로 유지하고 강우로 인하여 유입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6. 저류시설은 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공원시설과 기능적으로 또는 미관상으로 조화되도록 하고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저류장소와 저류용량을 정하여야 한다.</p> <p>7. 저류시설부지는 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운동시설 및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하여야 한다.</p> <p>8. 지상부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담당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관리방법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세부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9.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우시 저류지의 수위측정과 이용자의 대피를 알릴 수 있는 사이렌 또는 스피커 등의 감시 및 경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p> <p>10. 저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p> <p>11. 저류시설 안에는 수위표를 설치하고 우기 중에는 저류시설의 수위를 매시간 관측하여 기록하고 이를 저류시설의 저류한계수심·저류용량 및 허용방류량 등 수문자료로 활용한다.</p> <p>12. 공원관리사무소(저류시설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류시설관리사무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숲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p>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숲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숲아베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p>가. 설계강우의 재현기간 및 강우강도에 관한 자료 나. 집수면적 및 저류시설의 위치도 및 설계도서 다. 저류시설의 저류용량, 여수로(餘水路) 제원, 수문제원, 비상펌프 토출능력을 기재한 대장 및 관련자료 라. 저류시설의 저류한계수심, 허용방류량, 빗물이 저류시설에 의하여 저장된 양에 관한 자료 마. 그 밖의 관련 자료</p> <p>13. 저류시설의 관리자는 저류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제14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p> <p>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p> <p>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p> <p>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12, 2009.7.16., 2009.12.31., 2012.3.13., 2012.4.10., 2013.11.22, 2014.9.2, 2015.2.10.></p> <p>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태양에너지설비·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사설을 설치</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垸)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매수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p> <p>5. 경찰관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p> <p>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p> <p>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p> <p>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p> <p>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p> <p>나. 창고시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p> <p>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p> <p>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p> <p>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p> <p>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p> <p>13.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p> <p>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선</p> <p>14의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 시설 등의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p> <p>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p> <p>15의2. 연결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p> <p>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p> <p>17.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p> <p>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p> <p>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p> <p>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p> <p>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p> <p>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p> <p>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p> <p>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p> <p>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p> <p>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p> <p>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별표 1】 <개정 2015.2.10.></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23조제2호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19 424 1420 1391"> <thead> <tr> <th data-bbox="819 424 1025 507">점용할 수 있는 대상</th> <th data-bbox="1034 424 1420 507">구체적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19 513 1025 1088">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태양에너지설비·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td> <td data-bbox="1034 513 1420 1088">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 라.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td> </tr> <tr> <td data-bbox="819 1094 1025 1391">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td> <td data-bbox="1034 1094 1420 1391"> 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td> </tr> </tbody> </table>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태양에너지설비·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 라.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태양에너지설비·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 라.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p> <p>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할 것</p> <p>(1)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p> <p>(2) 삭제 <2009.12.31></p> <p>(3)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할 것</p> <p>(4)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이다. 그 밖에 도시공원 내 설치</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p> <p>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p> <p>라. 공동구의 관리사무소는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할 것</p> <p>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 노면과의 거리를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p> <p>가.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p> <p>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p> <p>다.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p> <p>라.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p> <p>4. 취수시설·관개용수로 및 배수시설 등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p> <p>5. 경찰관파출소·초소·표지·등대의 설치 가.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경찰관파출소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p> <p>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설의 설치</p> <p>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p> <p>8.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p> <p>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것</p> <p>(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p> <p>(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p> <p>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p> <p>다.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p> <p>라. 층수는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 아닐 것</p> <p>9.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p> <p>가.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p> <p>10.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p> <p>가.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일 것</p> <p>1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p> <p>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p> <p>(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p> <p>(3)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나목(2) 및 (3)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p> <p>(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p> <p>(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66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p> <p>(3)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내의 전통사찰(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은 제외한다)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p> <p>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p> <p>13. 제22조제15호의2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p> <p>14. 제22조제1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p> <p>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일 것</p> <p>가. 점용허가의 면적은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p> <p>나. 공원시설의 보존과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가.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 부분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p> <p>나. 점용허가의 면적은 공원 이용객의 통행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p> <p>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p>나. 층수는 3층 이하로 할 것</p> <p>제24조(매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2.3.13.></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9.16.]</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p> <p>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p> <p>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에</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p> <p>1. 지정에 관한 기준</p> <p>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p> <p>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p> <p>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p> <p>가.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p>	<p>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나.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소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p> <p>3.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 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p> <p>②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6.29., 2013.3.23.></p> <p>제26조(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p>	<p>제15조(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p> <p>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p> <p>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p> <p>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 활용시설</p> <p>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p> <p>마. 전기·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p> <p>바. 주택·근린생활시설</p> <p>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p>	<p>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3.></p> <p>【별표 2】 <개정 2013.11.22></p> <p>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19 600 1420 1391"> <thead> <tr> <th data-bbox="819 600 1021 683">건축물 또는 공작물</th> <th data-bbox="1030 600 1420 683">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19 689 1021 1391"> <p>1. 공공용 시설</p> <p>가. 도로 및 교량</p> <p>나. 철도 및 궤도</p> <p>다. 공중화장실</p> <p>라. 선착장</p> <p>마. 수도관 및 하수도관</p> </td> <td data-bbox="1030 689 1420 1391"> <p>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p> </td> </tr> </tbody> </table>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p>1. 공공용 시설</p> <p>가. 도로 및 교량</p> <p>나. 철도 및 궤도</p> <p>다. 공중화장실</p> <p>라. 선착장</p> <p>마. 수도관 및 하수도관</p>	<p>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p>	<p>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p> <p>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 및 제12조의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및 공작물축조 신고서 등 해당신청서</p> <p>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p> <p>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위치도</p> <p>2. 사업계획도서</p> <p>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p>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p>1. 공공용 시설</p> <p>가. 도로 및 교량</p> <p>나. 철도 및 궤도</p> <p>다. 공중화장실</p> <p>라. 선착장</p> <p>마. 수도관 및 하수도관</p>	<p>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p> <p>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p> <p>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p> <p>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p> <p>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숭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건폐율·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p>	<p>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바. 공동구(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p> <p>(1)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2) 관리사무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것</p> <p>2.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p> <p>가. 임시건축물</p> <p>「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p> <p>(1)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전·담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p>	<p>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p> <p>가. 축사</p> <p>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p> <p>다. 임시시설</p> <p>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9.16.]</p>	<p>(2) 사무소 등의 용도별 가설 건축물</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p> <p>「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어야 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하며,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용 가설건축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 관리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p> <p>(가)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p> <p>(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p> <p>(4)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건축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p> <p>(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p> <p>(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p> <p>나. 임시공작물</p> <p>(1)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공작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공작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p> <p>(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p> <p>(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비상재해용 가설공작물</p> <p>(3)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공작물</p> <p>3. 도시민의 여가 활용시설</p> <p>가. 휴양림 및 수목원</p> <p>나. 골프장</p> <p>4. 체력단련시설</p>	<p>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p> <p>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p> <p>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p> <p>「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국립수목원을 포함한다)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p> <p>(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할 것 (나)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할 것</p> <p>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철봉·평행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공익시설</p> <p>가. 전기관련시설</p> <p>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할 것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가) 전주·전신·변전소·지중변압기 및 개폐기의 설치에 한할 것 (나)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다)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나. 가스관련시설</p> <p>(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에 한할 것 (나) 가스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p> <p>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가스정압시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규모가 최소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p> <p>2) 1)의 경우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가스정압시설은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p> <p>4) 그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p> <p>다. 취수 및 배수 시설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 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p> <p>라. 경찰관파출소·초소·표지·등대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p> <p>마.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바. 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 시설 등</p> <p>(2) 전기통신설비(군용 설비는 제외한다)</p> <p>사. 공사의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p> <p>6. 주택·근린생활 시설</p>	<p>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것</p> <p>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p> <p>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에 한할 것</p> <p>취락지구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인 경우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조산원·탁구장 및 체육도장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기원·당구장·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사진관·표구점·학원·장 의사·동물병원·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만</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당한다]의 신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결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여야 한다.</p> <p>(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p> <p>(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주택(「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p> <p>7.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table border="1" data-bbox="819 264 1420 475"> <tr> <td data-bbox="819 264 1021 475">8. 어린이집시설</td> <td data-bbox="1030 264 1420 47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td> </tr> </table> <p data-bbox="819 533 1420 893">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3.11.22.></p> <ol data-bbox="819 909 1420 1382"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사 및 식목용 임업을 목적으로 한 개간 또는 초지의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이어야 하고,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농로·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어린이집시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8. 어린이집시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농업용 소류지(小溜池)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p> <p>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p> <p>6.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p> <p>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13.1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 흙과 돌의 채취 2.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베기 3.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재·폴리비닐클로라이드·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 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 쌓아놓기</p> <p>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간벌을 하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 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 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 여 심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0조(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별표 3】 <개정 2013.3.23></p> <p><u>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u> (제30조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15 596 1422 1388"> <tr> <td data-bbox="815 596 1021 1388">1. 일반적 기준</td> <td data-bbox="1021 596 1422 1388"> <p>가. 행위허가 목적물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 및 미관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p> <p>나. 지상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지하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다른 행위허가 목적물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td> </tr> </table>	1. 일반적 기준	<p>가. 행위허가 목적물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 및 미관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p> <p>나. 지상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지하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다른 행위허가 목적물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1. 일반적 기준	<p>가. 행위허가 목적물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 및 미관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p> <p>나. 지상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지하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다른 행위허가 목적물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마. 토지의 형질변경 및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물의 배수 등을 현지 여건에 맞게 참작하여야 한다.</p> <p>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하여야 한다.</p> <p>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p> <p>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허가된 시설의 부지면적은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면적[취락지구와 공공용시설(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나.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p> <p>다. 높이는 최대 12미터, 3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p> <p>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마.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p> <p>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전통사찰, 문화재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 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p> <p>(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2) 및 (3)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p> <p>나.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p> <p>(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p> <p>(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66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전통사찰(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은 제외한다)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p> <p>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p> <p>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이어야 한다.</p> <p>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p> <p>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으로 한다.</p> <p>(1) 축사는 3배 이내</p> <p>(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p> <p>(3) 별표 2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 당해 필지의 잔여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때에는 당해 잔여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당해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다.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이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의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p> <p>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숫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환토·다지가·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여야 한다.</p> <p>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5.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p> <p>가.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이어야 한다.</p> <p>나. 절토 또는 성토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다. 다음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면적을 합하는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1회</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한하여 계산한다.</p> <p>(1)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p> <p>(2) 행위허가의 신청 당시 이미 토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의 면적</p> <p>(3) 잡종지 또는 나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의 면적</p> <p>(4) 골프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면적 중 수목을 심고 가꾸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p> <p>(5) 골프코스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p> <p>라. 간이골프장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이어야 한다.</p> <p>제3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①법 제 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12.4.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경계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하천·임야·지적 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 	<p>제16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①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2.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할 수 있다. <p>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 내로 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9.16.]</p>	<p>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할 것 다. 외곽부에 입지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제외할 것 라. 재해예상지역은 제외할 것 마. 취락지구로 지정 후 개발시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바.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 사. 취락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때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 산정 기준 그 밖에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하여</p>	<p>【별표 7】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면적 +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면적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는 면적</p> <p>기본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호/10,000㎡)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p> </div>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계선의 정형화"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의 경계선을 장방형·다원형 등의 합리적인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를 말한다. 3. "호수밀도"는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수밀도를 말한다. 4.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은 취락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29., 2014.3.24.></p> <p>1.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p> <p>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p>	<p>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 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p> <p>2. 별표 2 제6호에 따른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p> <p>가.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p> <p>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p> <p>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p> <p>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p>	<p>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p> <p>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p>	<p>의 50퍼센트 미만일 것</p> <p>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p> <p>제35조(매수기한)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3.13.></p> <p>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 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p> <p>제37조(매수절차) ①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p>	<p>제17조(토지매수청구서의 제출서류)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08.2.29., 2012.3.13.,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4. 매수청구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대상토지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 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p>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7.10.15.>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1조(비용의 부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인이 정</p>	<p>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p> <p>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p> <p>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매수 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p> <p>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p> <p>③ 매수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p> <p>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p> <p>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p> <p>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수 및 면적</p> <p>3. 납부통지금액</p> <p>4. 납부기한</p> <p>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2조(협이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p>	<p>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p> <p>제39조(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3.13.></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p>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 등의 방법으로</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이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p> <p>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 	<p>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p> <p>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전문개정 2011.9.16.]</p> <p>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16.]</p>		<p>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6.30., 2012.4.13., 2013.11.22., 2014.7.15., 2015.2.12.></p> <p>1. 주로 공장·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그 설치·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p> <p>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p> <p>2. 주로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년·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p> <p>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관리할 것</p> <p>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p> <p>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p> <p>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p> <p>(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p> <p>(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p> <p>(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p> <p>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p> <p>다. 녹지율(도시·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p> <p>②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p> <p>③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특별	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①특	<p>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인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p>[제목개정 2013.11.22.]</p> <p>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 제공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1.9.16.]</p>	<p>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이하 "특정원인자"라 한다)는 당해 녹지의 결정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3.13.>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특정원인자에게 녹지의 설치·관리를 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접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 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와 특정원인자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p>	<p>신청시 구비서류)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설계서 2.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4.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제2항의 경우에 녹지의 설치가 2 이상의 특정원인자에게 관련되는 때에는 특정원인자 사이에 협의한 바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특정원인자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한다. <개정 2012.3.13.></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원인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숲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p>	<p>동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p> <p>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13.></p> <p>제41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게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p> <p>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p>	<p>제20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 녹지관리청은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2조(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훼손·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21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3.13., 2012.4.10.> 1.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p> <p>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p> <p>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설치</p> <p>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p> <p>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p> <p>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p> <p>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p> <p>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설일 것</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이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p> <p>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5.2.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2조제2호의 시설 중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장 비 용 <개정 2011.9.16.></p> <p>제39조(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p>	<p>가. 지형상황 등에 따라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p> <p>나. 송유관 및 열수송관의 맨 밑부분과 지면과의 거리를 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3.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p> <p>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제7장 비 용</p> <p>제45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관리비) ①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관리의 비용은 당해</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제 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야 정한다.</p> <p>⑤ 제37조에 따라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 원인 제공자가 서로 협</p>	<p>녹지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비·보상비·공사비 및 부대경비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부대경비를 말한다.</p> <p>②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녹지관리청 및 특정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의 설치·관리 비용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신청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p>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사가 재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정 원인이 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하여 정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⑦ 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9.16.]</p> <p>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p>	<p>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p>	<p>제21조 삭제 <2010.6.30.></p> <p>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p> <p>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 관리자가 이를 정한다.</p> <p>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광역시·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p>	<p>취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2.3.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삭제 <2009.12.31.> 	<p>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해당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44조(비용 보조) ①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8장 감 독 <개정 2011.9.16.></p> <p>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특별</p>	<p>제47조(비용보조)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 2.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8장 감 독</p> <p>제48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 38조제1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p> <p>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p> <p>[전문개정 2011.9.16.]</p> <p>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p>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p>	<p>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p> <p>제49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법 제 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p> <p>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이행이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p> <p>2.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하며, 지하 또는 공중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손실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군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47조(청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9장 보 칙 <개정 2011.9.16.></p> <p>제48조(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9.16.]</p>	<p>제9장 보 칙</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p>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p> <p>[전문개정 2011.9.16.]</p> <p>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 	<p>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4.10.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p> <p>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p> <p>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p> <p>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p> <p>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p> <p>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9.16.]</p> <p>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 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p>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는 행위</p> <p>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p> <p>제5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2.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014년 1월 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⑤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제51조(도시공원 대장)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의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4.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2014년 1월 1일</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2015년 1월 1일 3.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3.12.30.]</p>	<p>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①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은 별표 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그 작성·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16.]</p> <p>제52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1.9.16.]</p> <p>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p>		<p>【별표 8】 <개정 2010.6.30></p> <p>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447 383 2049 1356"> <tr> <td data-bbox="1447 389 1666 574"> <p>1.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p> </td> <td data-bbox="1675 389 2049 1350"> <p>가.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나. 도시공원의 위치 다.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공원관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라. 도시공원의 관리방법 마. 도시공원의 연혁 (1)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2) 조성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3) 도시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 연월일 (4) 도시공원사업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5)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 개시일 (6) 그 밖의 참고사항 바.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관리청(공원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p> </td> </tr> </table>	<p>1.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p>	<p>가.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나. 도시공원의 위치 다.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공원관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라. 도시공원의 관리방법 마. 도시공원의 연혁 (1)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2) 조성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3) 도시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 연월일 (4) 도시공원사업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5)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 개시일 (6) 그 밖의 참고사항 바.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관리청(공원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p>
<p>1.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p>	<p>가.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나. 도시공원의 위치 다.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공원관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라. 도시공원의 관리방법 마. 도시공원의 연혁 (1)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2) 조성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3) 도시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 연월일 (4) 도시공원사업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5)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 개시일 (6) 그 밖의 참고사항 바.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관리청(공원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11.9.16.]</p>		<p>사. 공원시설에 관한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및 명칭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바닥면적 및 연면적을 말한다)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4) 노천형태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단일 공원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이 혼합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의 형태 중 비중이 가장 큰 형태의 시설로 분류하고, 공작물 또는 노천 시설의 설치면적은 해당시설의 외벽 또는 울타리 그 밖의 경계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산출한다) (5) 공원시설별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 관리방법 (7) 공원시설의 설치연월일 (8) 공원시설의 사실상 공용개시일 (9) 공원시설 중 전력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작동하는 기계의 시설로서 그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관한 사항</p> <p>아. 건폐율의 합계</p> <p>자.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와 해당도시공원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p> <p>차. 점용목적물에 관한 내용</p> <p>(1) 종류 및 명칭</p> <p>(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p> <p>(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p> <p>(4)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p> <p>(5)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444 268 1668 735"></td> <td data-bbox="1668 268 2051 735"> <p>(6) 점용기간(점용 허가 연월일을 포함한다)</p> <p>카.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0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 도시공원의 경계</p> <p>(2) 공원조성계획의 내용</p> <p>(3)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의 내용</p> <p>(4) 점용 중에 있는 점용목적물의 내용</p> </td> </tr> <tr> <td data-bbox="1444 735 1668 1385"> <p>2.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p> </td> <td data-bbox="1668 735 2051 1385"> <p>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위치</p> <p>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연혁</p> <p>(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p> <p>(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실상 개시일</p> <p>(3) 그 밖의 참고사항</p> <p>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의 명세</p> <p>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p> <p>(1) 종류 및 명칭</p> <p>(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p> </td> </tr> </table>		<p>(6) 점용기간(점용 허가 연월일을 포함한다)</p> <p>카.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0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 도시공원의 경계</p> <p>(2) 공원조성계획의 내용</p> <p>(3)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의 내용</p> <p>(4) 점용 중에 있는 점용목적물의 내용</p>	<p>2.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p>	<p>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위치</p> <p>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연혁</p> <p>(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p> <p>(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실상 개시일</p> <p>(3) 그 밖의 참고사항</p> <p>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의 명세</p> <p>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p> <p>(1) 종류 및 명칭</p> <p>(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p>
	<p>(6) 점용기간(점용 허가 연월일을 포함한다)</p> <p>카.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0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 도시공원의 경계</p> <p>(2) 공원조성계획의 내용</p> <p>(3)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의 내용</p> <p>(4) 점용 중에 있는 점용목적물의 내용</p>					
<p>2.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p>	<p>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위치</p> <p>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연혁</p> <p>(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p> <p>(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실상 개시일</p> <p>(3) 그 밖의 참고사항</p> <p>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의 명세</p> <p>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p> <p>(1) 종류 및 명칭</p> <p>(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 및 건축면적</p> <p>(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p> <p>(4)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p> <p>(5) 허가신고일, 허가번호, 준공일자,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등에 관한 사항</p> <p>(6) 시설물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 등 그 현황</p> <p>마.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0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p> <p>(2)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내용</p> <p>(3) 행위허가된 시설물에 관한 내용</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장 벌 칙 <개정 2011.9.16.></p> <p>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p> <p>1.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p>	<p>제10장 벌칙 <신설 2010.6.29.></p>	<p>②도시공원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p> <p>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개시일부터 3개월</p> <p>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p> <p>③ 삭제 <2010.6.30.> [제목개정 2010.6.30.]</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p> <p>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p>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p> <p>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p> <p>[전문개정 2011.9.16.]</p> <p>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 외의 관리를 한 자</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3.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p> <p>[전문개정 2011.9.16.]</p> <p>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9.12.29.]</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6조(과태료) ①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1.9.16.]</p>	<p>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 <개정 2013.11.22></p> <p style="text-align: center;"><u>과태료의 부과기준</u>(제51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19 561 1420 1391"> <thead> <tr> <th>위반행위</th> <th>해당 법조문</th> <th>과태료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td> <td>법 제56조 제1항</td> <td>800만원</td> </tr> <tr> <td>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td> <td>법 제56조 제2항</td> <td>10만원</td> </tr> <tr> <td>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td> <td>법 제56조 제2항</td> <td>5만원</td> </tr> <tr> <td>4.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td> <td>법 제56조 제2항</td> <td>5만원</td> </tr> <tr> <td>4의2.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td> <td>법 제56조 제2항</td> <td>7만원</td> </tr> <tr> <td>5.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td> <td>법 제56조 제2항</td> <td>7만원</td> </tr> <tr> <td>6.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td> <td>법 제56조 제2항</td> <td>5만원</td> </tr> <tr> <td>7.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td> <td>법 제56조 제2항</td> <td>10만원</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	800만원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4.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4의2.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7만원	5.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7만원	6.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7.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p>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2014년 1월 1일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2014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3.12.30.]</p>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	800만원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4.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4의2.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7만원																											
5.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7만원																											
6.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7.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19 264 1182 354">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td> <td data-bbox="1191 264 1317 354"></td> <td data-bbox="1326 264 1420 354"></td> </tr> <tr> <td data-bbox="819 360 1182 507">8.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td> <td data-bbox="1191 360 1317 507">법 제56조 제2항</td> <td data-bbox="1326 360 1420 507">3만원</td> </tr> <tr> <td data-bbox="819 513 1182 628">9.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td> <td data-bbox="1191 513 1317 628">법 제56조 제2항</td> <td data-bbox="1326 513 1420 628">5만원</td> </tr> <tr> <td data-bbox="819 635 1182 782">10.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td> <td data-bbox="1191 635 1317 782">법 제56조 제2항</td> <td data-bbox="1326 635 1420 782">5만원</td> </tr> <tr> <td data-bbox="819 788 1182 979">11.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장애인 또는 노약자는 제외한다)</td> <td data-bbox="1191 788 1317 979">법 제56조 제2항</td> <td data-bbox="1326 788 1420 979">5만원</td> </tr> <tr> <td data-bbox="819 986 1182 1101">12.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td> <td data-bbox="1191 986 1317 1101">법 제56조 제2항</td> <td data-bbox="1326 986 1420 1101">10만원</td> </tr> <tr> <td data-bbox="819 1107 1182 1222">13.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td> <td data-bbox="1191 1107 1317 1222">법 제56조 제2항</td> <td data-bbox="1326 1107 1420 1222">5만원</td> </tr> <tr> <td data-bbox="819 1228 1182 1375">14.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경우</td> <td data-bbox="1191 1228 1317 1375">법 제56조 제2항</td> <td data-bbox="1326 1228 1420 1375">10만원</td> </tr> </table>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3만원	9.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0.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1.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장애인 또는 노약자는 제외한다)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2.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13.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4.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3만원																								
9.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0.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1.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장애인 또는 노약자는 제외한다)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2.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13.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4.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76호, 2005.3.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녹지확보 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173호, 2005.12.9.></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3.13.></p> <p>[본조신설 2010.6.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 중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88호, 2005.12.30.></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공원시설의 설치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안전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원시설 분부터 적용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적용한다.</p> <p>제3조(도시공원의 세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결정·처분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p>	<p>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3조(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제22조·제23조·제43조 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의 대상 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종교용 시설의 증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3층 이상의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층수(설치 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의 층수를 말한다) 이하로 이를 증축할 수 있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③(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원시설은 제7조·제11조·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⑤(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p> <p>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p>③제9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장이 이 법 시행후 두 번째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이 경우 최초로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p> <p>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 조치)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p> <p>② 삭제 <2009.12.29></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9조</p>	<p>제54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p> <p>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p> <p>③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3호 라목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p> <p>④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2호 카목중 「도시공원법」 제2조</p>	<p>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 2007.10.1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 2008.3.1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7호, 2008.11.1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7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p> <p>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p> <p>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p>	<p>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p> <p>⑤지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7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9512호, 2006.6.12.></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시행한다.</p> <p>제2조(편익시설 면적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를 말한다)의 매장 면적 및 부대시설의 연면적은 제11조제2항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매장 면적 및 부대시설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 2009.3.2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 개정한다.</p> <p>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p>	<p>부칙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 2008.2.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0 까지 생략</p> <p>④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p>	<p>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 2009.7.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93호, 2009.12.1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8호, 2010.1.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로 한다.</p> <p>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p> <p>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p> <p>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3호 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호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p> <p>별표 1 제11호가목 및 별표 3 제3호가목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p> <p>④②부터 ④③③까지 생략</p> <p>부칙 (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 2008.10.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p> <p>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가목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3호란 중 "모노레일·삭도"를 "케도"로 한다.</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7호, 2010.6.30.></p> <p>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1호, 2010.10.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78호, 2011.8.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p> <p>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p> <p>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p>	<p>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⑩ 부터 ⑳ 까지 생략</p> <p>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 2008.12.3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 2009.6.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11호 구체적 기준란의 가목 단</p>	<p>제2조(어린이집에 대한 특례) 2011년 12월 7일까지는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 중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직장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 본다.</p> <p>부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 2012.4.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p> <p>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p> <p>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p>	<p>서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 부터 ⑧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 2009.7.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9호다목 중 "축사·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을 "작물 재</p>	<p>한다.</p> <p>⑫부터 ⑳까지 생략</p> <p>부칙 <제550호, 2012.12.11.></p> <p>이 규칙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⑦까지 생략</p> <p>④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④⑨부터 ⑤⑥까지 생략</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p> <p>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p>	<p>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p> <p>별표 2 제2호가목(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중 "축사·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p> <p>④ 부터 ⑫ 까지 생략</p> <p>부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 2009.12.1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p> <p>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39호, 2013.11.22.></p> <p>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 2013.12.30.></p> <p>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 2014.7.1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p>	<p>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단서 및 같은 난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⑱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1965호, 2009.12.3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p>	<p>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p> <p>㉑부터 ㉓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 2014.8.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p> <p>부칙 <제132호, 2014.10.22.></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위허가</p> <p>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⑦ 까지 생략</p> <p>⑤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⑨ 까지 생략</p> <p>⑥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p> <p>⑥⑪부터 ①②까지 생략</p> <p>부칙 <제22239호, 2010.6.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취락지구에서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이었으나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축이 가능해진 기존 건축물은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신축이</p>	<p>부칙 <제184호, 2015.2.12.></p> <p>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제1호라목·제4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p> <p>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후단,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제6항·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㉞부터 ㉟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9860호, 2009.12.29.></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금지된 기존 건축물로 보아 용도변경할 수 있다.</p> <p>부칙 <제22451호, 2010.10.14.></p> <p>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234호, 2011.10.1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 2011.1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p> <p>③(기존 도시공원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공원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의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의2, 제48조의2,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p>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⑳부터 ㉔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668호, 2012.3.1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 2012.4.1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㉑부터 ㉗까지 생략</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10264호, 2010.4.15.></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도시공원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거나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부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 2011.4.1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③까지</p>	<p>⑳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p> <p>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p> <p>제14조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p> <p>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p> <p>제22조제1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p> <p>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p> <p>제40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생략</p> <p>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나목 및 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p> <p>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p> <p>제6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p> <p>제10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p> <p>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p> <p>제16조의2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p> <p>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결정"</p>	<p>제43조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p> <p>제44조제3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p> <p>㉑부터 ㉕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 2013.3.2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p> <p>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으로 한다.</p> <p>제21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p> <p>제21조의2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p> <p>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p> <p>제37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p> <p>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p> <p>제4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p> <p>제48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p>	<p>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제3항, 별표 1 제11호나목(3) 및 별표 3 제3호나목(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㉞부터 ㉟까지 생략</p> <p>부칙 <제24879호, 2013.11.22.></p> <p>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 2013.12.30.></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2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p> <p>제52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p> <p>㉕부터 ㉞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 2011.8.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p>	<p><단서 생략></p> <p>부칙 (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 2014.3.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아목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11조 생략</p> <p>부칙 <제11060호, 2011.9.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6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다]"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25585호, 2014.9.2.></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663호, 2014.10.22.></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 2014.1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p> <p>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저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p> <p>④ 법률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서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p> <p>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4조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p>	<p>부칙 <제26095호, 2015.2.1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⑥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4항 중 "같은 조 제3호가목·나목 및 제6호"를 "같은 조 제3호가목·나목 및 제5호"로 한다.</p> <p>부칙 <제11581호, 2012.12.18.></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4호자목,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4항, 제1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1조의2제9항, 제39조제6항·제7항 및 제52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⑦부터 ⑩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11800호, 2013.5.2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977호, 2015.1.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051호, 2015.1.20.></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15.2.10.>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p>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태양에너지설비·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p> <p>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p>	<p>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p> <p>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다.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p> <p>라.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할 것</p> <p>(1)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p> <p>(2) 삭제 <2009.12.31></p> <p>(3)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할 것</p>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4. 취수시설·관개용수로 및 배수시설 등

- (4)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 다. 그 밖에 도시공원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라. 공동구의 관리사무소는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 노면과의 거리를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 다.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
 - 라.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경찰관파출소·초소·표지·등대의 설치

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가.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나. 경찰관파출소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8.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설치

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것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

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측량·수

9.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10.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라. 층수는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닐 것

가.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가.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일 것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 (3)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나목(2) 및 (3)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 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66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 (3)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내의 전통사찰(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은 제외한다)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일 것

1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	가. 점용허가의 면적은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나. 공원시설의 보존과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3. 제22조제15호의2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가.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 부분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점용허가의 면적은 공원 이용객의 통행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14. 제22조제1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층수는 3층 이하로 할 것

[별표 2] <개정 2013.11.2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p>1.공공용 시설</p> <p>가. 도로 및 교량</p> <p>나. 철도 및 궤도</p> <p>다. 공중화장실</p> <p>라. 선착장</p> <p>마. 수도관 및 하수도관</p> <p>바. 공동구(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p>	<p>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2) 관리사무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것</p>

2.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가. 임시건축물

- (1)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2) 사무소 등의 용도별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어야 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하며,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p>(3)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용 가설건축물</p>	<p>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p> <p>(가)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p> <p>(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p>
<p>(4)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건축물</p>	<p>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p> <p>(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p> <p>(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p>
<p>나. 임시공작물</p>	<p>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공작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p>
<p>(1)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공작물</p>	<p>(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p> <p>(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p>
<p>(2) 비상재해용 가설공작물</p>	<p>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p>
<p>(3)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공작물</p>	<p>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p>
<p>3.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p>	<p>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p>

가. 휴양림 및 수목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국립수목원을 포함한다)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골프장

(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할 것

(나)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할 것

4. 체력단련시설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철봉·평행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할 것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5. 공익시설

가. 전기관련시설

(가) 전주·전신·변전소·지중변압기 및 개폐기의 설치에 한할 것

(나)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다)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가스관련시설

(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에 한할 것

(나) 가스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가스정압시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규모가 최소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취수 및 배수시설

라. 경찰관파출소·초소·표지·등대

마.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바. 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

(1)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등

(2) 전기통신설비(군용 설비는 제외한다)

사. 공사의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2) 1)의 경우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3)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가스정압시설은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4) 그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것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에 한할 것

6. 주택·근린생활시설

취락지구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인 경우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조산원·탁구장 및 체육도장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기원·당구장·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동물병원·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만 해당한다]의 신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결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여야 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주택(「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

7.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8. 어린이집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별표 3] <개정 2013.3.23>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0조관련)

1. 일반적 기준

- 가. 행위허가 목적물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 및 미관과 공원으로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 나. 지상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지하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다른 행위허가 목적물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마. 토지의 형질변경 및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물의 배수 등을 현지 여건에 맞게 참작하여야 한다.
-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하여야 한다.
-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허가된 시설의 부지면적은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면적[취락지구와 공공용시설(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 다. 높이는 최대 12미터, 3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통사찰, 문화재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 (3) 나목(2) 및 (3)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나.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66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 (3) 전통사찰(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은 제외한다)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으로 한다.

(1) 축사는 3배 이내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

(3) 별표 2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 당해 필지의 잔여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때에는 당해 잔여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당해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결하여 새로이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의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숫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환토·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여야 한다.

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가.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나. 절토 또는 성토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면적을 합하는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1회에 한하여 계산한다.

(1)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2) 행위허가의 신청 당시 이미 토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의 면적

(3) 잡종지 또는 나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의 면적

(4) 골프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면적 중 수목을 심고 가꾸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5) 골프코스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라. 간이골프장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3.11.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	800만원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4.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4의2.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7만원
5.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7만원
6.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7.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8.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3만원
9.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0.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1.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장애인 또는 노약자는 제외한다)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2.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13.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4.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 서식

[별표 1] <개정 2015.2.12.>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공원시설	종 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3. 유희시설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 시설
4. 운동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나. 자연체험장
5. 교양시설	도서관,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미술관, 과학관,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학생기숙사(「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로 한정한다),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한다),

	<p>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 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전시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생태학습원(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포함한다), 민속놀이마당, 정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p>
6. 편의시설	<p>가. 우체통·공중전화실·휴게음식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일반음식점·약국·수화물예치소·전망대·시계탑·음수장·제과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제과점을 포함한다)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p> <p>나. 유스호스텔</p> <p>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p>
7. 공원관리시설	<p>창고·차고·게시판·표지·조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쓰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 우물, 태양에너지설비(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p>
8. 도시농업시설	<p>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온상·퇴비장, 관수 및 급수 시설, 세면장, 농기구 세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p>
9. 그 밖의 시설	<p>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p> <p>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p> <p>다. 동물놀이터</p>

[별표 2] <개정 2010.6.30>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개발계획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p>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계획</p>	<p>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7.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 계획</p>	<p>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p>
<p>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p>	<p>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p>
<p>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 계획</p>	<p>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p>

[별표 3] <개정 2013.11.2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p>1. 생활권 공원</p> <p>가. 소공원</p> <p>나. 어린이공원</p> <p>다. 근린공원</p> <p>(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p> <p>(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p> <p>(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p>	<p>제한 없음</p> <p>제한 없음</p> <p>제한 없음</p> <p>제한 없음</p> <p>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p>	<p>제한 없음</p> <p>250미터 이하</p> <p>500미터 이하</p> <p>1천미터 이하</p> <p>제한 없음</p>	<p>제한 없음</p> <p>1천5백제곱미터 이상</p> <p>1만제곱미터 이상</p> <p>3만제곱미터 이상</p> <p>10만제곱미터 이상</p>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바.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사.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별표 4] <개정 2013.11.22>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이하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라.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마. 체육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이하
바. 도시농업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 이하
사.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비고 : 바목에 따른 도시농업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도시텃밭의 면적은 제외한다.

[별표 5] <개정 2015.2.12.>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

1. 위치 및 경관

- 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 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 다. 철로 만든 높은 기둥과 그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 가.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골프연습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것

3. 설치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수

- 가.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하되,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하나의 공원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 또는 구에 속한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다. 제11조제2항제7호 단서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실내골프연습장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연습장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6] <개정 2011.8.31>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1.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自然流下)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삭제 <2011.8.31>
 - 나. 붕괴위험지역 및 경사가 심한 지역
 - 다.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
 - 라.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3. 저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한다.
4.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해당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수변공간조성 및 공원시설과의 겸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의 저수지를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공원시설 중 조경시설과 상시저류시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해당저류시설부지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고 강우시에는 저류지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60퍼센트 이상, 일시저류시설(평상시에는 건조상태로 유지하고 강우로 인하여 유입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저류시설은 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공원시설과 기능적으로 또는 미관상으로 조화되도록 하고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저류장소와 저류용량을 정하여야 한다.
7. 저류시설부지는 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운동시설 및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하여야 한다.
8. 지상부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담당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관리방법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세부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우시 저류지의 수위측정과 이용자의 대피를 알릴 수 있는 사이렌 또는 스피커 등의 감시 및 경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0. 저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
11. 저류시설 안에는 수위표를 설치하고 우기 중에는 저류시설의 수위를 매시간 관측하여 기록하고 이를 저류시설의 저류한계수심·저류용량 및 허용방류량 등 수문자료로 활용한다.
12. 공원관리사무소(저류시설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류시설관리사무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 설계강우의 재현기간 및 강우강도에 관한 자료
 - 나. 집수면적 및 저류시설의 위치도 및 설계도서
 - 다. 저류시설의 저류용량, 여수로(餘水路) 제원, 수문제원, 비상펌프 토출능력을 기재한 대장 및 관련자료
 - 라. 저류시설의 저류한계수심, 허용방류량, 빗물이 저류시설에 의하여 저감된 양에 관한 자료
 - 마. 그 밖의 관련 자료
13. 저류시설의 관리자는 저류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7]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면적 +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 면적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는 면적

기본면적(m²)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호/10,000m²)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m²)

비고

1. "경계선의 정형화"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의 경계선을 장방형·타원형 등의 합리적인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를 말한다.
3. "호수밀도"는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수밀도를 말한다.
4.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은 취락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별표 8] <개정 2010.6.30>

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

1.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나. 도시공원의 위치

다.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공원관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라. 도시공원의 관리방법

마. 도시공원의 연혁

(1)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2) 조성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3) 도시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 연월일

(4) 도시공원사업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5)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 개시일

(6) 그 밖의 참고사항

바.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관리청(공원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사. 공원시설에 관한 내용

(1) 종류 및 명칭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바닥면적 및 연면적을 말한다)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 (4) 노천형태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단일 공원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이 혼합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의 형태 중 비중이 가장 큰 형태의 시설로 분류하고, 공작물 또는 노천시설의 설치면적은 해당시설의 외벽 또는 울타리 그 밖의 경계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산출한다)
- (5) 공원시설별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6) 관리방법
- (7) 공원시설의 설치연월일
- (8) 공원시설의 사실상 공용개시일
- (9) 공원시설 중 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의 시설로서 그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공원 시설의 유지·수선에 관한 사항

아. 건폐율의 합계

자.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와 해당도시공원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

차. 점용목적물에 관한 내용

- (1) 종류 및 명칭
-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 (4)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
- (5)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6) 점용기간(점용 허가 연월일을 포함한다)

카.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도시공원의 경계
- (2) 공원조성계획의 내용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의 내용

(4) 점용 중에 있는 점용목적물의 내용

2.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위치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연혁

(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실상 개시일

(3) 그 밖의 참고사항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의 명세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1) 종류 및 명칭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4)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

(5) 허가신고일, 허가번호, 준공일자,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등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 등 그 현황

마.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

(2)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내용

(3) 행위허가된 시설물에 관한 내용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시공원(녹지)	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7>

(뒤쪽)

행위허가신청서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축목의 벌채, [] 물건의 적치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위치(지번)	지목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축목 재식 현황	주요 수종	입목이 있는 토지	입목이 없는 토지
			입목이 있는 토지		
	신청 면적				
	토석의 채취	신청 면적	부피		
	축목의 벌채	수종	면적	수량	
		중량	부피		
	물건의 적치	품명	평균 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허가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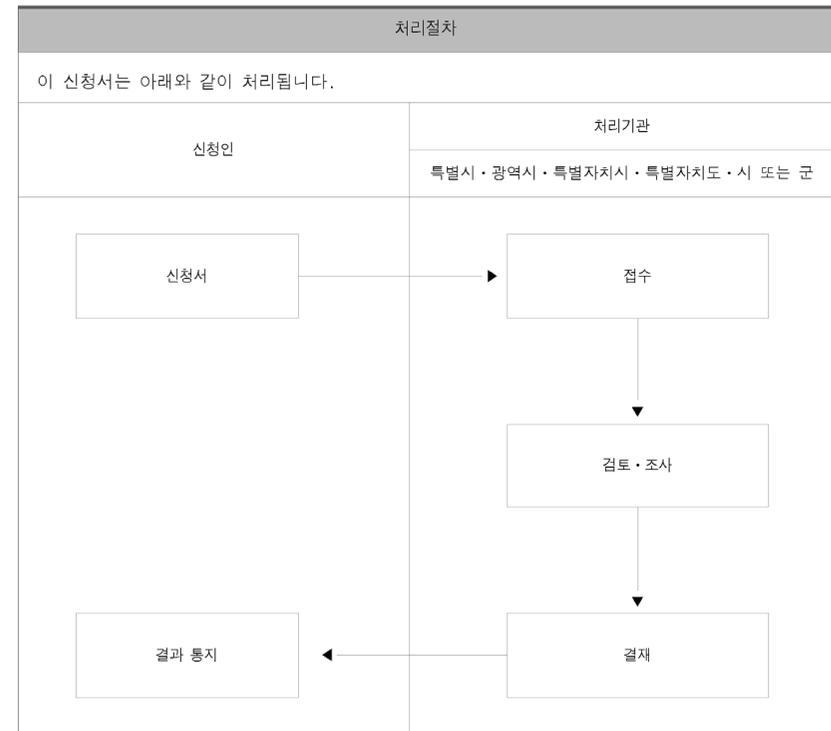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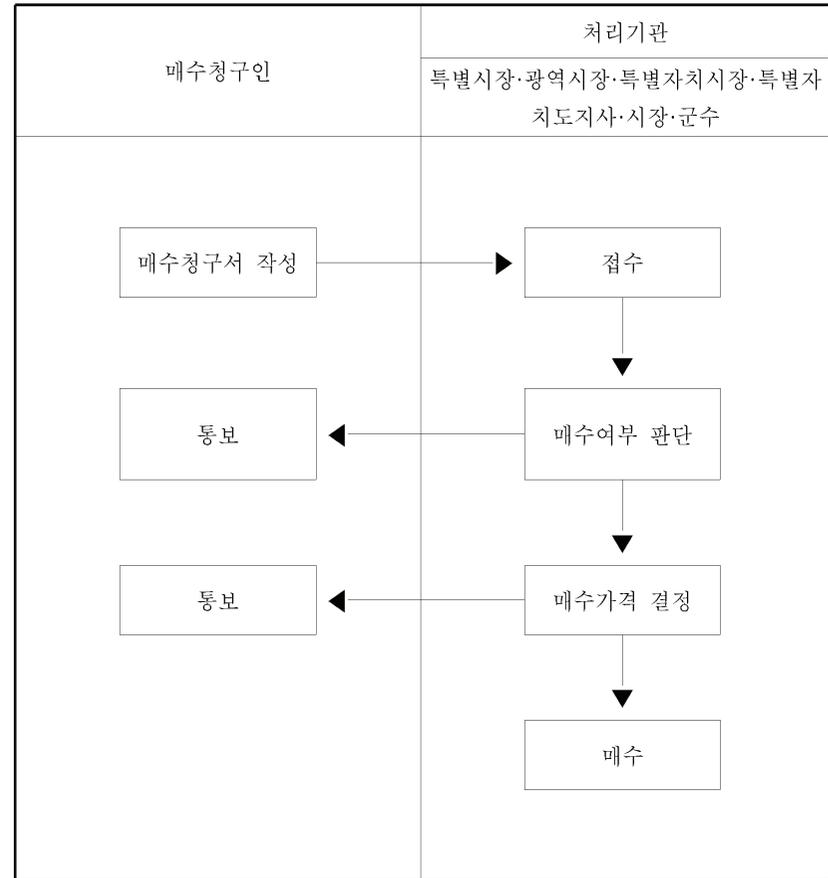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토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3년	접수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
매수청구인 (토지소유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전화:)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의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1				
2				
3				
매수청구사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첨부서류	청구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7>

(뒤쪽)

도시공원 입장료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교부일	처리기간	7일
------	-----	-----	------	----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시공원	명칭
	위치

공원시설 설치종류

입장료

입장료 징수 예정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원관리청 귀하

-----자르는 선-----

신고 제 호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도시공원	명칭	면적
	위치	

입장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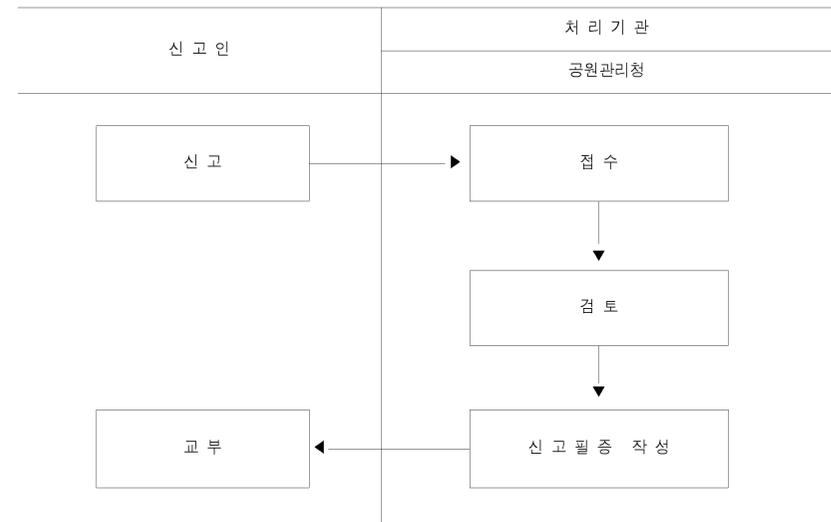
년 월 일

공원 관리 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241
-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289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27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355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65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383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정 건설교통부지침 제 5376 호, 2006.12.28.
폐지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42호, 2009. 8.1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 547 호, 2010. 1.12.
국토해양부훈령 제 862 호, 2012. 8.10.
국토교통부훈령 제 216 호, 2013. 5.15.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 (2) “공원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말한다.
- (3)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녹화를 말한다.
- (4) “도시공원”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5) “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지를 말한다.

(6)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제3절 적용범위

1-3-1.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4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의의

1-4-1.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 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제5절 지위와 성격

1-5-1. 자연,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계획이다.

1-5-2.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가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다.

1-5-3. 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역사·문화 등 측면을 포괄하여 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보전·관리·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다.

1-5-4. 시의 도시지역 안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다.

1-5-5. 시의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침계획이다.

제6절 법적근거

1-6-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는 법 제2장 제5조 부터 제10조 까지, 영 제4조 부터 제8조 까지 이다.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범위

제1절 계획수립의 대상

2-1-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대상 :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제2절 목표연도

2-2-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2-2. 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0년 또는 05년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목표연도를 같이 한다.

2-2-3. 이 경우 시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질 때에는 별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수립한다.

제3절 계획구역과 범위

2-3-1. 시의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2.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당해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3-3.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법 제2조제1호 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3-1-1.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 (2)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3)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미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 (4)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에 관한 사항
- (5)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 (6)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7)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 (8)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 (9) 추진 및 투자계획

제2절 기본원칙

3-2-1. 계획의 종합성 제고

- (1) 지역 및 광역적 자연생태환경, 경관, 사회·문화·역사 등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을 도출한다.
- (2)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도시환경의 전망을 예측하여 도시내 공원녹지의 전체 구상이 창의적이 되게 하고, 시행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립한다.

3-2-2.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

-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을 고려한다.
-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 조성·관리계획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같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2-3.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 (1)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지공간 등의 확충·정비·개량·보호에 주력하여 계획한다.
- (2) 녹지축·생태계·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야,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변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보전하도록 한다.

3-2-4. 계획의 차등화·단계화

- (1) 계획의 상세정도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주변환경의 특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한다.
- (2)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작성하고, 인구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2-5. 형평성과 다양성의 원칙

- (1) 공원녹지의 공간적 배분과 질적 수준에 있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형평성을 유지한다.
- (2) 도시의 공간적 다양성과 계층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제3절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3-3-1.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내용항목의 누락이 없을 것(변경 수립시에는 해당 부분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2)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
 - (가) 자료의 출처를 명시
 - (나)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장단기로 구별하여 적절하게 사용
- (3) 계획논리와 합리성 확보
- (4) 적절한 계획기법의 적용
- (5) 상위계획의 수용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 (6) 시설의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 확보
- (7) 공원녹지의 미래상, 목표에서 세부계획까지 계획의 일관성 확보

3-3-2. 성과물의 작성

- (1) 공원녹지기본계획도, 부문별 구상도 및 계획도는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공원녹지조성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의 내용과 용어사용, 도면표현이 분명하여야 한다.
- (2) 공원녹지기본계획서는 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3-3-3. 부문별 계획

-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미래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각 부문별 계획 간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2)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전략·실천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의 내용이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 전체계획의 통합성을 제고한다.

- (3)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도시여건을 예측한 후,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 및 단계별로 작성하고 당해 부분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한다.
- (4) 공원계획과 녹지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서로 연계하여 계획하며, 이를 종합한 공원녹지기본계획도를 작성한다.
- (5) 공원 및 녹지의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원녹지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6) 도시공원 중 생활권 공원은 권역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의 공원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3-4.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정비

- (1)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2) 재수립 시에는 기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4절 기본계획 작성의 과정

3-4-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작성절차는 계획의 준비단계, 현황조사단계, 자료분석 및 과제정리단계, 기본구상단계, 기본계획단계,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및 투자계획단계로 나눌 수 있다.

3-4-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작성과정은 **【별첨 3】** 과 같다.

제4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1절 목적

- 4-1-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1-2.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포함한 도시녹화계획·공원조성계획 등의 입안 시 해당 지역 및 주변의 자연 및 인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에 목적을 둔다.

제2절 기본원칙

- 4-2-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시의 자연 및 인문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4-2-2. 기초조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녹화계획·공원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정도를 깊이 있게 하고, 측량(항공측량 포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4-2-3. 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4-2-4. 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2-5. 기초조사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당해 시와 이와 연결된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의 이해
- (2) 당해 시의 공원 및 녹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과제의 도출
- (3) 공원녹지의 이용자, 선호도 등 수요예측
- (4) (1)·(2)·(3) 사항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변화를 예측
- (5) 역사문화 등 지역의 장소성 이해
- (6) 조사자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3절 조사범위·방법·항목

4-3-1. 조사범위

- (1) 기초조사의 범위는 시의 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녹지체계, 하천유역 등이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4-3-2. 조사방법

- (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조사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3) 공원녹지의 증감, 공원이용객, 레크레이션의 추세 등과 같이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 (4) 지리정보체계(GIS), 수치지도,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 등 최근 분석기법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 (5)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능하면 도면이나 도표의 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4-3-3. 조사항목

- (1) 기초조사는 관련계획 및 법규,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공원녹지·녹화현황조사, 주민의식조사, 국내외 사례분석으로 크게 나누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과 같다,
- (2) <표 4-1>의 대항목과 세부항목의 조사내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조사방법은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하고, 간접조사는 기존의 자료 또는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정리, 도표화·도면화,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조사는 기술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4) 각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내용과 더불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표 4-1>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비고	
			간접조사	직접조사
	관련계획·법규	광역·도시기본계획(계획기간, 도시미래상, 목표인구, 생활권 등), 관련계획 및 법규, 공원녹지정책 등	○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비고	
			간접조사	직접조사
자연환경	기상, 미기후	기상개황(기온, 강수량, 강설량, 주풍향, 풍속, 천기일수, 안개일수 등), 미기후(열섬현상, 바람길, 특징적 기상현상 등)	○	
	지질	지질분포, 암석노출부, 기암괴석 등	○	○
	지형지세	광역지형지세, 지형분석, 고도분석, 경사분석, 향분석	○	
	수문/수질	유역분석, 수계분석, 하천별 특성·수량·수질·주변여건, 저수지, 유수지, 습지 등	○	○
	지하수	지하수용량, 지하수질, 지하수 오염 등	○	
	재해	과거 50년간 풍수해, 산불 기록 및 예측 등	○	
	토양	토양분포 및 특성, 등급분포 등	○	○
	식생	식생분석, 보호식물, 침입성외래수종 등	○	○
	야생동물	주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이동경로, 비오톱조사 등	○	○
	광역생태계	광역생태계 분석	○	
	생태기반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녹지기반성분석 등	○	
인문환경	도시연혁	도시형성역사, 도시산업·경제·문화특성 등	○	
	인구	규모(총수, 분포, 세대수), 구성(산업·연령별) 및 예측 등	○	
	토지이용	토지이용현황, 용도별 면적·분포, 인구집중지구, 시가화지역 위치·면적 등	○	
	도시시설	주요공공시설, 학교, 교통시설 등	○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비고	
			간접조사	직접조사
	시가지개발사업	시가지개발사업지 등	○	
	공해발생상황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	
	토지소유	토지소유현황(국유, 시유, 사유 등)	○	
	문화·역사자원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적 장소, 마을신앙상징물, 풍수형 국·설화 등	○	○
	레크레이션시설	레크레이션 성향, 레크레이션·체육시설 및 분포 등	○	○
경관		도시 및 자연경관(경관특성 및 실태조사)	○	○
공원녹지·녹화	공원	공원유형별 위치, 면적, 유치권, 서비스수준, 시설평가, 이용 현황, 이용프로그램 등	○	○
	녹지	시설녹지의 현황(위치, 면적, 성격, 이용 등), 기타녹지 현황, 지역지구별 녹지현황, 훼손지 현황 등	○	○
	광장/공공공지/유원지	광장, 공공공지, 유원지 현황(위치, 개소, 면적, 이용 등) 등	○	○
	녹화현황	녹화추진현황(공공, 민간) 등	○	
	녹피현황	토지피복분류, 녹피면적 등	○	
	가로수, 보호수, 큰나무	가로수, 보호수 및 큰나무의 종류, 위치, 상태 등	○	○
주민의식조사		공원녹지·레크레이션에 대한 주민성향, 만족도, 요구사항 등	○	○
국내외 사례분석		국외사례, 국내사례, 계획의 시사점 등	○	○

제4절 조사내용

4-4-1. 기초조사의 일반적 항목에 따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계획 및 법규

- (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기간, 도시의 미래상, 계획연도 목표인구, 장래 시가지규모, 생활권 구분 등을 정리한다.
- (나)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및 법규를 검토한다.
- (다) 공원녹지정책 체계,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한다.
- (라) 각종 법적 규제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도면화 한다.

(2) 자연환경

(가) 기상, 미기후

- ① 기상개황 : 연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풍속, 계절별 풍향, 강수량, 평균습도, 강설량, 풍향, 천기일수 등을 표 또는 그래프로 표현한다.
- ② 미기후 : 필요시 열섬현상, 특징적 기상현상, 안개발생지, 바람길 등을 간접자료 또는 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도면에 위치를 표시한다.

(나) 지질조사

- ① 지질도(관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를 바탕으로 지질분포, 암석노출부 등을 표시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암괴석 등 특이한 지질을 도면에 표시하고 계획시 주안점을 기술한다.

(다) 지형·지세분석

- ① 지형도를 통해 광역 및 계획지 안의 지형·지세를 파악하고,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보전해야 할 중요한

지형을 분석한다.

- ② 지형분석도는 산악지·구릉지·평탄지·저습지·수면 등으로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 ③ 수치지형도의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통하여 고저도, 경사도, 향분석도를 작성한다.

(라) 수문, 수질조사

- ① 수치지형도의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통하여 수계 및 유역분석도를 작성한다.
- ② 하천별 특성, 수량, 수질, 주변 토지이용을 분석하여 도면 및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 ③ 저수지와 유수지, 습지를 표시하고 주변현황을 현황사진과 더불어 분석한다.

(마) 지하수조사

- ① 지하수용량, 지하수질, 지하수오염 등에 대하여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도면화한다.

(바) 재해조사

- ① 과거 50년간 풍수해 지역은 기상청자료, 지형도분석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분석·도면화하고, 과거 산불이 빈번한 지역 및 산불예상지역 등을 기존 자료를 활용 및 분석하여 도면화한다.

(사) 토양조사

- ① 정밀토양도(관리기관 : 국립농업과학원)를 활용하여 토양도를 작성하며, 필요한 지역에는 토양분석을 실시하고 도면화한다.

(아) 식생조사

- ① 기 제작된 수치임상도·현존식생도(관리기관 : 산림청)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 식생현황을 파악하고, 정밀식생조사 방향을 설정한다. 기존에 정밀 식생이 조사된 지역은 조사이후 변화된 부분을 보완하며, 정밀식생이 조사되지 않은 지역은 식물사회학적 방법 등으로 군락단위의 정밀식생조사를 시행한다. 주요한 식물군락 및 희귀식물, 보호식물, 침입성외래수종 등을 표시한 「식생분포도」를 작성하고, 식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자) 동물상조사

- ① 기존자료의 활용 또는 현장조사에 의하여 주요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이동경로 등을 조사하여 「야생동물분포도」를 작성한다. 필요시 식물상과 연계한 비오톱조사를 시행한다.

(차) 광역생태계분석

- ① 기존 지형도 및 인공위성,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의 광역생태계를 분석하고 대상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카) 생태기반

- ① 기존의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관리기관 : 환경부)를 활용하여 개략적 생태기반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생태적 조건과 개발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생태기반을 평가하는 녹지기반성(Green Infrastructure) 분석을 수행하여 녹지축, 거점, 생태통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인문환경

(가) 도시연혁

- ① 도시형성의 역사, 도시의 산업, 경제, 문화 등의 특색을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나) 인구조사

- ① 인구규모 : 현재의 인구총수, 증감, 분포, 세대수 및 목표연도의 예측수치를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 ② 인구구성 : 현재의 산업분류별 취업자 수, 연령별·성별 인구를 조사하고, 목표연도의 예측 수치를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다) 토지이용조사

- ① 도시계획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용현황, 용도별 면적 및 분포, 시가화지역의 위치와 면적 등을 조사하여 도표 및 도면화한다.

(라) 도시시설조사

①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요 공공시설, 학교, 교통시설(철도, 도로 등) 등을 조사하여 도면화한다.

(마) 시가지개발사업조사

①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및 미래에 예측되는 시가지개발 사업을 조사하여 도면화한다.

(바) 공해발생상황조사

①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발생지에 대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표로 정리하고 도면화한다.

(사) 토지소유조사

①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국유, 사유, 사유지 등을 구분하여 도면화한다.

(아) 문화역사자원조사

①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지정문화재 및 분포상황, 천연기념물, 역사적 장소, 마을신앙상징물, 풍수형국설화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위치도, 표, 사진 등으로 작성한다.

(자) 레크레이션시설조사

① 기존의 공공 및 민영 레크레이션 및 체육시설의 분포를 조사하여 표 및 도면으로 작성한다.

(4) 경관

(가) 현장조사를 통해 자연 및 도시경관에 대한 경관특성 및 실태를 조사한다.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5) 공원녹지·녹화현황

(가) 공원현황

① 공원(구역)현황도 :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의 도시공원과 도시지역공원구역 등을 도면에 표시한다.

- ② 공원(구역)총괄표 : 도시전체 및 계획단위(생활권)별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의 위치, 면적, 지정현황, 조성 여부 등의 총괄표를 작성한다.

(나) 녹지현황

- ① 녹지현황도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 시설녹지를 도면에 표시한다.
- ② 녹지총괄표 : 시설녹지에 대한 위치, 면적 등 총괄표를 작성한다.
- ③ 훼손지현황도 : 개발에 따른 절개지 및 훼손지를 도면에 표시한다.

(다) 녹화현황

- ① 도로 녹화, 공공공익시설 녹화, 사유지 녹화현황, 시민참여 녹화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녹화현황을 조사한다.
- ②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등의 녹화상황을 조사하여 표 및 사진으로 작성한다.

(라) 광장·공공공지·유원지 등

- ① 광장, 공공공지,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녹지현황을 조사하여 도면, 사진 및 표를 작성한다.

(마) 가로수, 보호수, 큰나무

- ① 도시 안의 가로수의 규격, 수종, 수량 및 식재시기 등을 노선별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가로수현황도」를 작성한다.
- ② 보호수 및 큰나무(시가화지역 직경 20cm 이상, 기타지역 직경 30~50cm 이상)를 조사하고 사진 및 속성의 관리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다.

(6)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 ① 설문지, 전화설문, 공청회, 인터넷 등에 의하여 주민들의 성향,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도표로 제시한다.
- ② 설문에는 지역일반, 공원·녹지, 경관,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 여가요구, 공원이용형태 등에 대한 주민의 성향과 요구를

포함시킨다.

- ③ 적절한 사회조사방법을 택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높인다.
- ④ 분석내용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성방향을 정리하고,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7) 국내외 사례분석

- ① 국내외 유사 및 선진사례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간접자료를 검토하여 계획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 ② 필요시 현장답사를 수행하고 주요 개념별 사례사진을 첨부한다.

제5절 공원녹지 수요분석

4-5-1. 공원녹지의 수요는 표출된 수요, 잠재적 수요, 비교수요, 기준에 따른 수요 등에 의하여 분석한다.

4-5-2. 공원녹지의 수요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녹피율 분석

(가) 녹피율이란 도시 전체의 면적에 대하여 하늘에서 볼 때 나무와 풀 등 녹지로 피복된 면적(수관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도시에서 식물피복지의 양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녹피율에는 공원 내에서 광장과 같이 녹지로 피복되지 않은 면적과 하천에서 수면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녹지율과 다르다.

$$\text{① 녹피율(\%)} = \text{녹피면적(m}^2\text{)} / \text{도시지역 면적(m}^2\text{)} \times 100$$

(2) 공원녹지율 분석

(가) 공원녹지율은 공원과 녹지면적의 크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도시 전체의 면적에 대한 공원과 녹지의 비율 및 시가화지역의 면적에 대한 공원과 녹지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에서 공원과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과 녹지로서 동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① 도시전체공원녹지율(%) = $\frac{\text{공원녹지면적(m}^2\text{)}}{\text{도시지역 면적(m}^2\text{)}} \times 100$

② 시가화지역 공원녹지율(%) = $\frac{\text{공원녹지면적(m}^2\text{)}}{\text{시가화지역 면적(m}^2\text{)}} \times 100$

(3) 1인당 공원면적

(가) 도시 전체 및 계획단위(생활권)별 공원면적 비율을 산정한다.

(나) 1인당 공원면적(m²) = $\frac{\text{공원면적(m}^2\text{)}}{\text{인구수}}$

(4) 공원의 서비스수준 분석

(가) 공원의 서비스수준은 공원의 접근성, 분포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나) 지역 내 공원의 위치, 접근성, 이용수준,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고, 최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공원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생활권별 서비스수준을 도면 및 표로 제시한다.

(5) 이용자의 수요분석

(가) 이용자의 수요분석은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들의 성향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이다.

(나) 설문지, 전화설문, 공청회, 인터넷 등에 의하여 주민들의 성향,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도표로 제시한다.

(6) 레크레이션의 추세분석 및 수요시설과 프로그램

(가) 전국적, 지역적 해당 도시의 과거 레크레이션 추세와 미래의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옥외레크레이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나) 각종 통계자료 및 주민선호도에 따른 주요 옥외레크레이션 시설의 추세를 기술하고, 미래의 레크레이션 수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표로 제시한다.

제6절 기초조사 결과의 관리

4-6-1.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로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녹화계획·공원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2. 기초조사 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한다.

4-6-3. 기초조사 결과는 수치지도로 제작하고, 지리정보체계(GIS)에 의해 관리시스템을 제작하여 향후 계획수립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 및 활용방법은 별도의 책자를 인쇄하여 보관 및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각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등 주민이 이들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4. 캐드(CAD), 국가지리정보체계(GIS) 등 도면제작 및 자료구축 컴퓨터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범용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료 및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2차 가공이 용이하도록 하며, 도시기본계획 자료와의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제7절 종합분석

4-7-1. 자료분석 및 평가방법

(1) 계획수립을 위하여 조사된 자료를 분석,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리정보체계(GIS) 등을 이용한 도면중첩방법(Overlay Method)이나 기타 공간분석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가) 도면중첩방법 :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의 결과 등을 도면화한 지도를 지리정보체계(GIS) 등을 이용하여 중첩시켜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거나 구체적인 문제점을 추출하는 등의 분석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나) 지리정보체계(GIS) : 지리정보체계는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로써, 지리정보체계의 다양한 공간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기초자료의 분석, 수정, 도면제작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4-7-2. 자료의 종합 및 과제의 정리

- (1) 개별적으로 분석된 자료 및 과제를 정리하여 계획과 직접 연결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를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관련계획 및 법규, 공원녹지, 녹화 등의 주요 분석항목별로 「종합분석표」를 작성하고 이를 도면화한 「종합분석도」를 작성한다.
- (2) 공원녹지의 보전, 정비, 확충, 여가활동이용, 경관 등의 계획 범주별로 주요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도면화한 「과제종합도」를 작성한다.

제5장 공원녹지 기본구상 수립기준

제1절 공원녹지의 미래상, 목표 및 지표설정

5-1-1. 공원녹지의 미래상과 목표

- (1) 공원녹지의 미래상은 시의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조성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해당 도시의 자연적·사회적·역사적·문화적인 특성에 맞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감안하여 시민의 생활상과 부합되도록 설정한다.
- (2) 미래상의 설정에는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테마 또는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고 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 녹지목표, 녹지배치계획, 녹화방침 등의 방향에 관하여 간단하고 알기쉽게 설정하고, 「공원녹지 미래상 개념도」를 작성한다.
- (3)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구현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제시한다.

5-1-2. 계획의 전제조건

- (1) 계획대상구역 : 시의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이와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두 계획구역을 대비하여 면적을 산정표로 제시한다.
- (2) 인구전망 :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추정치를 활용하여 현황, 연차별 인구, 목표연도의 인구를 표로 제시한다.
- (3) 시가화지역의 규모 : 시가화지역에 대한 인구·면적·인구밀도를 현황, 연차별, 목표연도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한다.

5-1-3. 계획의 목표수준(지표)

- (1) 목표설정에 있어서는 향후 도시의 녹지보전 또는 녹화에 대한 이념설정과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념설정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량적 목표수준을 설정한다.
 - (가) 녹피율 : 현재의 녹피의 비율과 목표 연도에 달성할 녹피의 비율을 산정하여 도시 전체 및 계획구역별 식물피복지의 확보를 위한 지표로 설정한다.
 - (나) 공원녹지율 : 지형이나 도시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존 도시 전체에 대한 공원녹지율과 시가화지역의 공원녹지율을 파악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확보가 예상되는 목표연도의 공원녹지율을 산정하여 향후 목표연도까지 도시지역 전체 및 시가화지역의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지표로 삼는다.
 - (다) 1인당 공원면적 지표 : 현재의 1인당 공원면적을 산정하고 목표연도까지 확보되는 공원면적을 산정하여 도시지역 전체 및 계획단위(생활권)별 공원 확보를 위한 지표로 설정한다.
 - (라) 공원의 서비스수준 지표 : 각 계획단위(생활권)별 계획연도에 달성할 공원서비스 수준을 지표로 설정한다.

(마) 도시녹화 목표수준 : 도시지역 전체, 공공공익시설, 사유지 등의 녹화 현황과 계획연도의 목표량(도시녹화율)을 설정한다.

제2절 공원녹지 기본구상

5-2-1. 공원녹지의 배치방향

- (1) 공원녹지가 가지고 있는 도시녹지의 골격형성에 기여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며, 공원녹지의 배치방향을 설정한다.
- (2) 공원녹지의 배치는 환경보전, 여가활동 및 이용, 경관향상 등 부문별 배치구상과 이들을 종합한 도시의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배치구상을 수립한다.

5-2-2.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

(1) 보전체계구상

- (가) 자연생태환경, 역사적 풍토, 도시골격형성, 쾌적한 생활환경, 농지 등 다양한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 (나) 상업지, 주택지, 공장 등 각 지구의 성격에 적합한 지구내의 경관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하고 녹화 추진계획을 세운다.
- (다) 시가화지역 내에 보전해야 하는 농지는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녹지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적절한 보전 계획을 세운다.
- (라) 보전체계구상을 도면화한 「환경보전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2) 확충체계구상

- (가) 다양한 공원녹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의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 (나)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 및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한 형태 및 규모의 공원녹지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다) 주택지, 상업지, 공장지, 유원지, 공개공지 등 민간녹지를 활용한 공원녹지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라) 공원녹지 확충은 재생가능한 자연환경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구상한다.

(마) 공원녹지 확충구상을 도면화한 「공원녹지 확충구상도」를 작성한다.

(3) 이용체계구상

(가) 균형있게 도시공원을 배치, 정비, 조성 및 특성화시키고, 상호 연계 이용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상한다.

(나) 도시공원, 시가지 내 수림, 수변 등 일상생활권 공원녹지와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등 광역생활권의 공원녹지를 적절히 정비 및 배치한다.

(다) 권역별 지역특성에 따라 공원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라)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동향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 문화학습, 자연접촉 등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이용체계를 구상한다.

(마) 공원녹지이용체계 구상을 도면화한 「공원녹지 이용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4) 경관체계구상

(가) 경관형성체계는 주로 공원녹지에 따른 도시경관 향상에 대한 체계이다. 도시생활환경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녹지에 따른 경관요소의 창출 및 개선을 구상한다.

(나) 생활공간 속에서 인위적인 요소와 식물, 물 등 자연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한다.

(다) 지역경관의 정체성을 이루는 현존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가로수, 녹도 등 녹지에 의해 지역의 정체성 창출을 구상한다.

(라) 역사 문화재와 일체된 수림지, 사찰림, 대도시 주변의 근교농지, 사면녹지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하여 경관을 구성한다.

(마) 권역별 핵심적인 경관특성을 추출하여 특성화 방안을 구상하며, 도시관리계획의 경관계획과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바) 경관체계구상을 도면화한 「경관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5-2-3. 공원녹지 종합 배치구상

- (1) 공원녹지의 부문별 배치구상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발전방향, 도시개발축, 기존 공원녹지 및 주변 환경과 연계되도록 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 (2) 시의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체계도 변화되므로, 광역계획권 및 생활권의 공간구조와 연계되도록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 (3) 도시지역의 녹지기반을 이루는 골격적 공원녹지축을 구상한다.
 - (가) 공원녹지의 기본 골격은 환형, 방사형, 방사고리형, 군집형, 사다리형, 손가락형 등의 녹지패턴 중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를 취하되 녹지와 시가지의 접점이 가능한 많고, 각 시가지의 중심부까지 녹지가 도입되도록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 (나) 도시간의 광역 녹지축을 고려하여 도시 내의 녹지축을 구상하며, 광역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 (다) 광역녹지축은 녹지핵과 거점이 되는 녹지를 축으로 하고 국토 및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상 환경보존이 필요한 광역녹지축과 생활권 단위의 국지적 특성이 반영되고 도시내부 녹지의 관리가 요구되는 도시녹지축을 설정한다.
 - (라) 각 공원녹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공원녹지의 망(Network)을 구상한다.
 - ① 식물의 자생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는 수림지, 수변, 농지 등과 도시의 기온, 온도조절, 통풍작용에 기여하는 하천, 수면, 그리고 도시공간에서의 도로 등 도시의 생태적 기능의 향상, 주민의 생활 및 이용 등이 연계되도록 공원녹지의 망(network)을 구상한다.
 - ② 공원녹지의 망은 핵, 거점, 점의 녹지와 선형의 공원녹지계획을 통하여 공원녹지간 상호 연결이 되어 생물 서식공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생태적 망(Network)과 주민의 생활과 이용체계를 고려한 이용 망(Network)을 구상한다.
 - (마) 공원녹지축과 망의 계획은 최신의 이론에 바탕을 둔 구체적 분석방법(예 : Green Infrastructure Assessment 등)에 의하여

최적지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축과 망을 계획한다.

- (4) 공원녹지종합구상안을 도면화한 「공원녹지종합구상도」를 작성한다. 공원녹지종합구상도에는 부문별 배치구상의 핵심사항, 녹지핵과 거점, 공원녹지축, 공원녹지망 등을 표시한다.

제6장 부문별 수립기준

제1절 공원기본계획

6-1-1. 기본방향

- (1) 설정된 목표 및 지표, 공원녹지배치구상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에 확보할 도시공원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2) 주변의 이용권, 이용형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및 인구 배분계획 및 공원의 수요분석에 따라 공원의 위치·규모 및 기능을 배분한다.
- (3) 생활권별로 공원녹지가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공원서비스 수준 분석에 따라 공원이 부족한 생활권에 녹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 (4) 주제공원은 도시의 특성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원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주제를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5)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원성격, 접근동선, 식재, 건축물, 구조물, 공원시설물, 울타리, 사인시스템, 포장, 조명, 주차장, 안전,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공원별 공원조성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6-1-2. 공원정비계획

- (1) 지속가능한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정비체계를 수립한다.

- (2) 기존 공원의 현황분석 및 정비목표에 따라 기존 공원의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 (3) 공원녹지 수요 및 요구수준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 도시의 발전에 대응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 (4) 기 지정 장기 미집행 공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제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6-1-3. 공원 확충계획

- (1) 공원의 미래상, 목표, 공원의 수요 등 미래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한 형태 및 규모의 공원 확충계획을 마련한다.
- (2) 기존의 공원녹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확충계획을 마련한다.
- (3) 이전적지,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공원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 (4) 공원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도시공원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도면화한 「도시공원확충계획도」를 작성한다.

6-1-4. 공원 배치계획도 및 공원총괄표

- (1) 목표연도에 확충할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에 대한 「공원배치계획도」와 「공원총괄표」를 작성한다.
- (2) 목표연도 및 연차별 공원계획과 현황을 비교하는 「공원계획전후 비교도」와 「공원계획전후 비교표」를 작성한다.

제2절 녹지기본계획

6-2-1. 녹지기본계획의 방향

- (1) 녹지기본계획은 녹지배치계획, 녹지보전계획, 녹지확충계획, 녹지복원계획, 녹지정비 및 관리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 (2) 녹지가 가지고 있는 도시녹지의 골격형성에 기여하고, 녹지축과 망을 형성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며 도시녹지의 보전과 확충을 위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3) 녹지배치는 시설녹지와 기타녹지로 구분하되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기타녹지는 수요분석에 의하여 제시된 주요 녹지를 선정 계획한다.
- (4)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나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배치한다.
- (5) 지역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경관녹지를 배치한다.
- (6) 도시 내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선형의 녹지공간에 연결녹지를 배치한다.

6-2-2. 녹지보전계획

- (1) 생태적 중요성, 이용, 관리, 방재 등의 측면에서 녹지의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 (2) 필요시 녹지보전지구를 지정하며, 녹지보전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하여 녹지의 특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수목이나 시설에 관하여 행위 규제 등을 정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시킨다.
- (3) 녹지보전을 위한 시설(산사태 방지시설, 산책로, 휴게소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4) 녹지보전지구는 우선적으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녹지활용계약 등을 계획한다.
- (5) 녹지보전계획을 도면화한 「녹지보전계획도」를 작성한다.

6-2-3. 녹지확충계획

- (1) 생태적 중요성, 접근성, 도시공간구조,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한 녹지기반분석을 바탕으로 녹지확충계획을 수립한다.
- (2)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민간부문에서의 녹지의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 (3) 녹지확충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녹지확충계획을 마련한다.
- (4) 단계별 녹지확충계획을 도면화한 「녹지확충계획도」를 작성한다.

6-2-4. 녹지복원계획

- (1) 훼손된 산림지, 토목공사지 등 조사된 훼손지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단계적 복원방안을 마련한다.
- (2) 녹지체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하고 주요 녹지를 연결하는 선형녹지축 등을 조성하는 등 녹지체계가 연계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다.
- (3) 단계적 복원계획을 도면화하여 「녹지복원계획도」를 작성한다.

6-2-5. 가로수계획

- (1) 가로수의 경관효과, 가로의 정체성, 효과적 관리 등을 위해 체계적인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2) 가로수의 수종선정 및 배치는 주변의 생태적 환경, 역사, 장소성,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배치한다.
- (3)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른 「가로수기본계획도」 및 「가로수총괄표」를 작성한다.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6-2-6. 녹도(Greenway) 및 보행자전용도로계획

- (1) 연결녹지의 하나로 기존의 녹도를 정비하고 장기적 확보계획을 제시한다.
- (2) 새로 조성할 녹도에 대하여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 (3) 녹도와 연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한다.
- (4)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도」를 작성한다.

6-2-7. 생태통로계획

- (1) 보전체계 구상을 근본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이 예상되는 지점과 생태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생태통로를 계획한다.
- (2) 목표종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생태통로의 형태를 선정한다.
- (3) 생태통로 계획에 따른 「생태통로계획도」를 작성한다.

6-2-8. 자전거도로계획

- (1) 주요하천, 녹도, 공원, 여가시설 사이를 자전거로 순환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체계와 연계하여 자전거도로망을 계획한다.
- (2) 자전거도로망계획과 단계별 조성계획이 도면화된 「자전거도로계획도」를 작성한다.

6-2-9. 경관도로계획

- (1) 필요시 호수, 산림, 농경지, 초지, 가로수 등 우수한 경관요소를 통과하는 지역에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경관도로계획을 마련한다.
- (2) 경관도로계획과 단계별 조성계획이 도면화된 「경관도로계획도」를 작성한다.
- (3) 계획대상지역이 산림인 경우 산림관련계획(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제3절 도시녹화계획

6-3-1. 기본방향

- (1) 도시지역에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중점녹화지역) 과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한다.

- (2) 도시녹화계획은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Network)형성계획과 상호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제시한다.
- (3) 필요시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한다.

6-3-2. 중점녹화지구

- (1) 도시공간에서 녹지의 보전과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중점녹화지구를 설정, 도면화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2) 중점녹화지구는 도시의 자연·인문적 상황 및 수요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 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필요시 녹화중점지구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한다.

6-3-3. 도시녹화계획

- (1) 설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구체적인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6-4-1. 기본방향

- (1) 도시의 발전의 기반이 되고 골격을 형성하는 양호한 자연환경 및 산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인접 지자체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녹지 보전 체계를 강구한다.
- (2) 도시 안의 다양한 동식물상이 서식하고 있는 도시공원, 녹지 및 유사 공원녹지 등의 생태계 보전과 경관형성을 위하여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네트워크화 한다.
- (3) 도시의 전체적인 공원녹지의 목표 및 지표, 녹지보전 체계 및 경관체계 구상에 따라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으로 정비하고, 장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확보할 구역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4) 도시민들의 광역적, 도시적 여가행태 및 주변의 여가자원의 이용권,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장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는 녹지수요를 고려하여 구역별 규모 및 기능을 배분한다.
- (5) 도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요구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역별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6-4-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비 및 관리지침

- (1)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호소나 습지, 산지, 동식물의 서식지 등 광역적으로 중요성이 큰 녹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전한다.
- (2) 녹지보전 목적의 유사한 용도지역(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개발제한구역) 및 지구(경관지구, 녹지보전지구 등), 하천구역, 공원녹지 등의 배치 및 분포를 고려하여 연계되도록 배치한다.
- (3)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계획 및 목표, 이용행태, 이용시설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4) 녹지의 보전 및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토지의 매입 및 매입된 토지의 관리, 녹지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정비(관리)계획을 마련한다.

(5) 지속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6-4-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확충계획

- (1) 장래의 목표인구 및 보전녹지의 수준(지표)를 고려하여 미래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한 형태 및 규모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확충계획을 마련한다.
- (2) 시가지 내에서 기존의 공원녹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범위를 검토한다.
- (3) 도시자연공원구역별 정비 및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규 확충해야 할 양호한 산지는 연차별 구역 정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6-4-4.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도 및 구역 총괄표

- (1) 목표연도에 보전, 확보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배치계획도」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총괄표」를 작성한다.
- (2) 목표연도 및 연차별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과 현황을 비교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전후 비교도」와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전후 비교표」를 작성한다.

제5절 공원녹지기본계획

6-5-1. 목표연도에 확보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시설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점녹화지구 등이 종합적으로 표시된 「공원녹지기본계획도」와 「공원녹지총괄표」를 작성한다.

6-5-2. 목표연도 및 연차별 공원녹지의 계획과 현황을 비교하는 「공원녹지계획 전후 비교도」와 「공원녹지계획 전후 비교표」를 작성한다.

제7장 공원녹지의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수립기준

제1절 공원녹지 관리계획

7-1-1. 기존 및 미래에 확보할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및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7-1-2. 필요에 따라 생활주변의 소규모의 공원녹지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모가 큰 공원녹지는 지자체가 수행할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7-1-3. 필요에 따라서는 관리협정 등을 통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공원녹지 이용계획

7-2-1. 공원녹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공원녹지의 활용상태 및 프로그램, 미래의 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원녹지의 이용프로그램을 수립한다.

7-2-2. 수요분석에서 실시한 레크레이션 추세, 시설, 행태 등을 바탕으로 공원녹지 공간에서 시행 가능한 적절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제3절 주민참여 프로그램

7-3-1. 공원녹지계획에 주민 참여와 협력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한다.

7-3-2.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설문지, 면담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을 택한다.

7-3-3. 공원녹지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주민참여방법을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제4절 추진 및 투자계획

7-4-1. 추진계획

(1) 기본방향

(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나) 공원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략을 구축한다.

(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도입한다.

(2) 계획시행을 위한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3) 공원녹지의 보전·확충 등 단계적 추진을 도면화하여 「공원녹지 추진계획도」를 작성한다.

7-4-2. 투자계획

(1) 재정수요를 추정하고 세입원칙, 조달방법과 투자우선원칙을 정한다. 이 경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3섹터의 참여에 의한 자본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재원계획을 마련한다.

(3) 주요사업 및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은 투자우선원칙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8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절차

제1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

8-1-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으로 하되, 인접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8-1-2.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정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조정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경우 : 당해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조정
- (2) 조정 대상구역이 2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 관할 도지사(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

8-1-3. 공원녹지기본계획 입안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부서 및 기획·예산·집행(공원·녹지·산림 관련 부서 포함)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8-1-4. 공원녹지기본계획 입안은 시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 홍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게 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1-5. 각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8-2-1. 작성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대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8-2-2. 관할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당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 (1) 공청회 개최목적
-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 (3) 수립하고자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개요
- (4) 기타 필요한 사항

8-2-3.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한다.

8-2-4. 사안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조사한다.

8-2-5. 공청회 등의 개최결과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신청 시 첨부한다.

제3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신청

8-3-1.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제외한다)은 입안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당해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8-3-2. 삭제(2010.1.12)

8-3-3. 삭제(2010.1.12)

8-3-4. 승인신청서류

- (1)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신청 공문(시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공청회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도(안), 공청회 개최 결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관계 지방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내용 각1부
- (3) 공원녹지기본계획(안)(공원녹지기본계획도(안) 포함) 50부
- (4) 기초조사 자료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10부
- (5) 최근 공원녹지기본계획도 각 5부(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종전의 도시관리계획도(또는 도시계획도 및 국토이용계획도)를 첨부)

제4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8-4-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지사는 신청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8-4-2. 도지사는 승인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시장에게 송부한다.

8-4-3. 신청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보완하여 승인한다.

8-4-4.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수립 또는 승인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승인된 공원녹지기본계획 골격을 토대로 내용의 보완과 설명도의 삽입 등으로 기본계획서를 보완한 후, 최종 공원녹지기본계획서를 색도 인쇄한다.

8-4-5.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최종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8-4-6. 최종 공원녹지기본계획서 작성 시에는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계획, 공원·녹지조성계획 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자료집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서 규격 : 별첨 1)

- (1) 작성기간 : 공원녹지기본계획입안 최초 구상부터 최종 공원녹지기본계획서 작성 시까지
- (2) 수록대상 : 작성기간 중에 있었던 최초구상, 용역의 발주 및 집행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 공청회 또는 주민 의견청취(열람), 관계법규 지침, 질의회신 등 당해 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 (3) 수록내용 : 일시, 장소, 관계기관명, 관계자 직·성명, 회의내용, 주민의견,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 사유 포함), 관계법규, 지침(발취), 질의회신(발취) 등을 일정별 내용상의 성질별로 구분 수록

제9장 행정사항

9-1.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9-342호, 2009.8.19.>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지침의 폐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환경팀-5376, 2006. 12. 28)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제2010-547호, 2010.1.1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6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 <제862호,2012.8.10.>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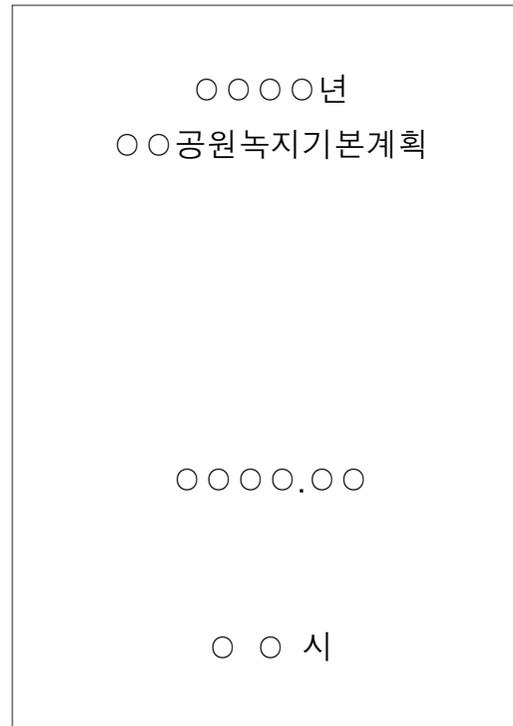
부 칙 <제216호, 2013.5.15.>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1. 공원녹지기본계획서의 규격 및 작성기준

- 가.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좌철하고, 양면으로 인쇄한다.
- 나. 계획서의 표지는 자율적으로 색도 디자인한다.
- 다. 내용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다.
- 라.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마. 각 부문별 계획내용은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 바. 계획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면, 도표, 그림, 개념도를 많이 삽입하여 이해하기 쉽고,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사. 각 계획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의 공원녹지 발전과 목표년도 시의 공원녹지 모습이 상상될 수 있도록 한다.
- 아. 자료집은 계획서외에 별도의 책자와 CD로 제출한다.
- 자. 계획서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 최종 목표년도 표시
- 시명 표시
- 승인되기 전의 계획서에는 끝에 “(안)” 표시
- 계획수립 연도 및 월 표시
- 시명 및 로고표시

【별첨 2】

2.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작성기준

가. 개념

장래의 공원녹지체계를 계통별, 시설별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도면으로 목표년도의 배치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개념적 형태를 표시

나. 내용

- (1) 공원녹지에 대한 용도와 시설뿐만 아니라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토지이용이나 시설들이 포함되며, 토지이용이나 시설의 표기는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에 따른다.
- (2)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연환경 : 하천, 저수지 등
 - (나) 토지이용 : 도시용지, 개발예정용지, 보전녹지 등
 - (다) 공원시설 :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
 - (라) 녹지시설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생태통로, 녹도 등) 등
 - (마) 지역 및 지구 :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점녹화지역, 개발제한구역, 녹지보전지구 등
 - (바) 기타유사녹지시설 : 운동장, 유원지,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경관도로 등

다. 도면축척

- (1) 대상지역에 따라 1/50,000, 1/25,000 중 선별하여 사용
- (2)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 1/50,000
- (3) 일반시 : 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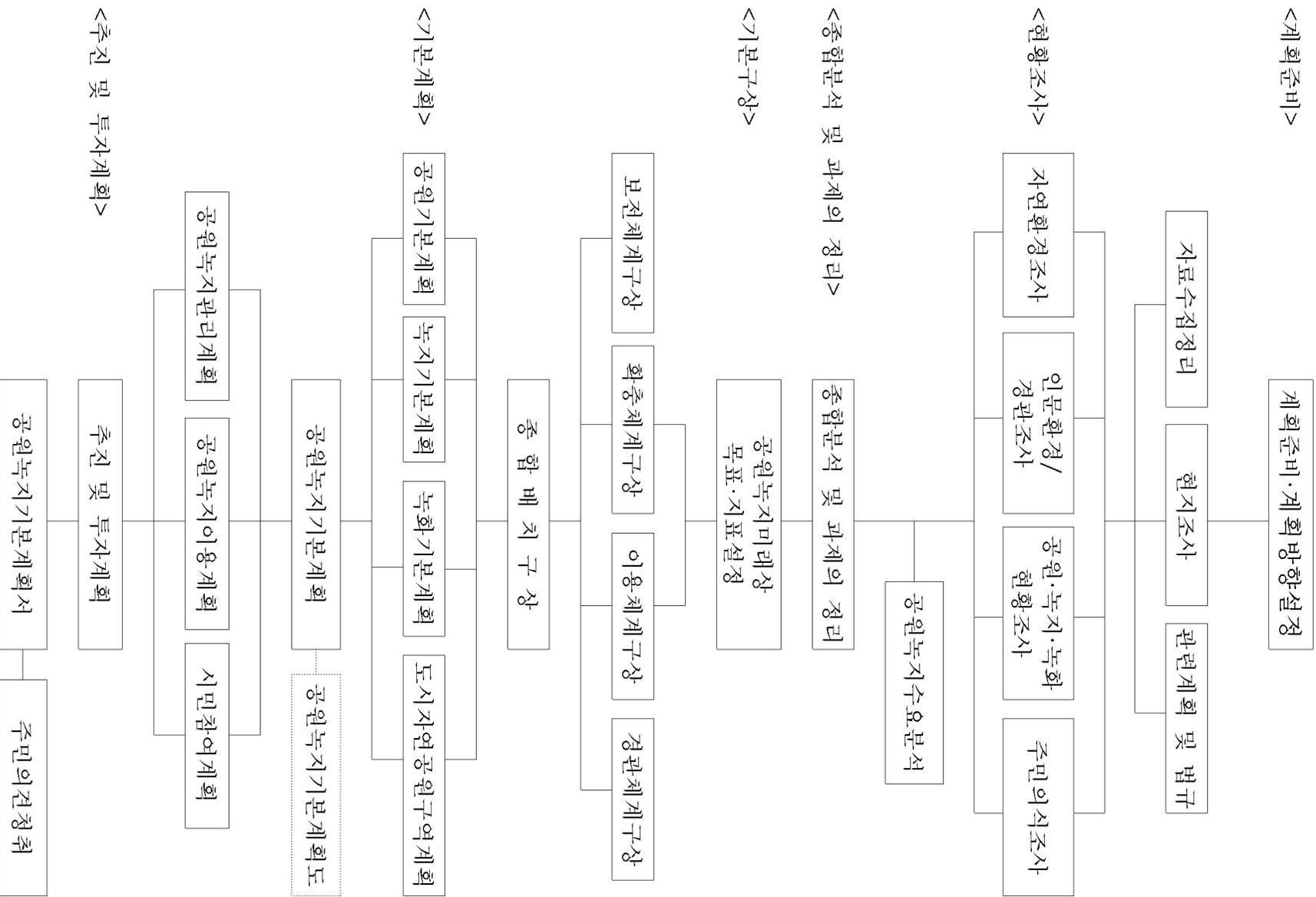
※ 도면 1매에 계획구역 전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 축척을 사용한다.

라. 공원녹지기본계획도 표시방법

- (1) 경계표시 : 기준년도의 행정구역, 도시계획구역과 목표년도의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지역을 도시관리구역 및 도시기본계획구역으로 표시한다.
- (2) 토지이용
 - (가) 시가화용지
 - 1) 주거용지 : 밝은 노랑
 - 2) 상업용지 : 분홍색
 - 3) 공업용지 : 옅은 보라
 - (나) 시가화예정용지 : 옅은 갈색
 - (다) 보전용지 : 옅은 녹색
 - (라) 해면 : 옅은 파랑
- (3) 도시계획시설
 - (가) 공원, 유원지 : 도시기본계획지침의 도시기본구상도와 동일

- (나) 보행자전용도로 : 공원색깔의 지름 1.5mm원을 1.5mm간격으로 연결
 - (다) 시설녹지 : 폭 2-5mm의 공원색깔의 선으로 표시
 - (라) 자전거전용도로, 경관도로 : 폭 2-3mm, 길이 4-5mm의 공원색깔의 점선을 2mm 간격으로 연결
- (4) 기타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지침의 도시기본구상도에 준하여 표시

【별첨 3】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작성과정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제정 건설교통부지침 제 4414 호, 2006.10.30.
폐지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41호, 2009. 8.1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 863 호, 2012. 8.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215 호, 2013. 5.15.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녹지의 조성 및 도시녹화에 관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체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 시범사업의 지정, 시범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이를 적용한다.

1-2-2.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법, 영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절 법적근거

1-3-1.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 제3조와 영 제2조이다.

제2장 시범사업 지정의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제1절 기본방향

2-1-1.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시범사업을 통하여 공원녹지분야의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파, 확산시킴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제2절 대상사업

2-2-1. 시범사업은 도시공원·녹지의 조성사업, 도시녹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들 수 있다.

- (1) 주제공원사업 : 역사, 문화공원 및 수변공원 등 다양한 테마를 갖는 공원사업
- (2) 생활권공원사업 : 녹지가 부족한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조성사업
- (3) 연결녹지사업 : 공원과 공원, 시가지와 거점녹지를 연계하는 연결녹지 조성사업
- (4) 도시녹화 등 사업 : 시가지의 녹화전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사업
- (5)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조성이 되지 아니한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조성사업(다만, 도시공원의 세분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고려하여야 함)
- (6) 사·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의 조성사업
- (7) 기타 법·영이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제3절 일반원칙

2-3-1. 시범사업 지정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공원녹지의 확충 및 질적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2)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은 도시환경의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3) 도시환경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환경의 상대적 낙후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도시를 상징하고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 (4) 시범사업은 공원녹지의 확충과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5) 시범사업은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며,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시범사업은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고 대표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 (7) 시범사업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등 관련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련계획의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 공원녹지의 축과 망,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8)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9) 투자계획이 수요 추정의 객관성·사업성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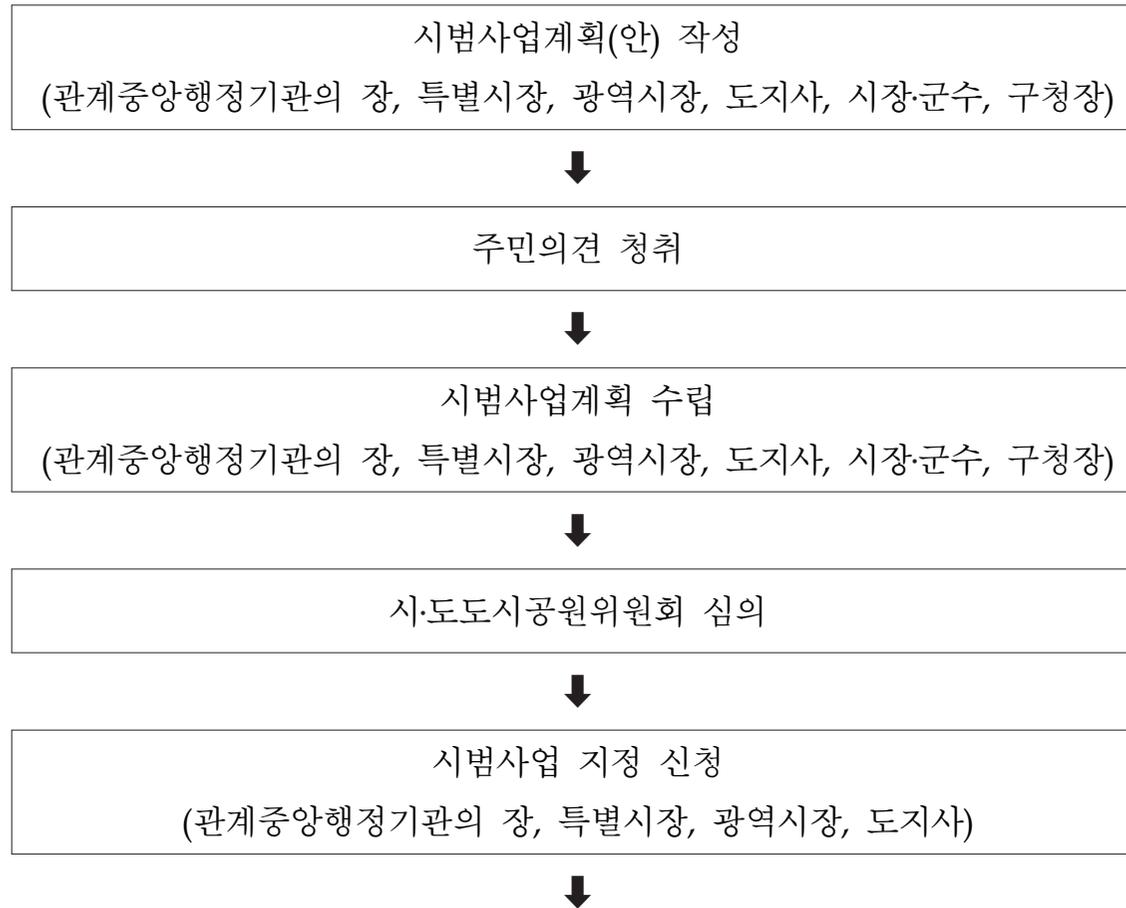
2-3-2.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중·장기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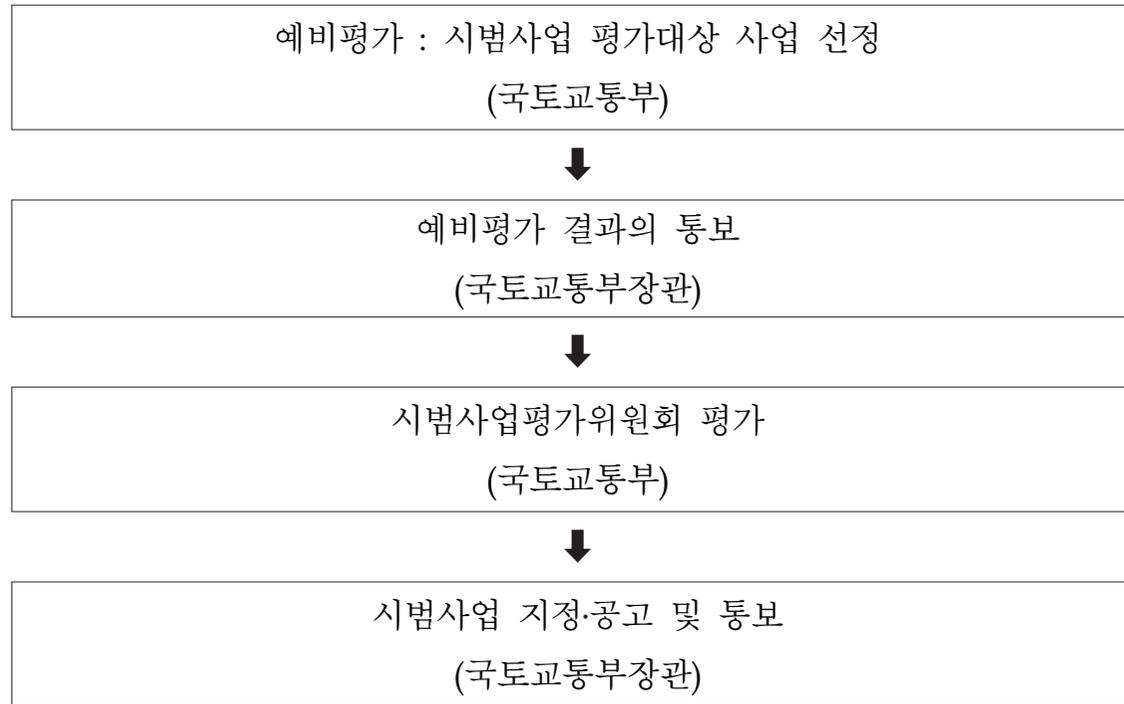
2-3-3. 시범사업은 일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범사업과 개발제한구역안의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4-3-1.에 따라 지정한다.

제4절 지정절차

2-4-1. 시범사업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2-4-2.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4-1.에 따른 지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계획(안)을 직접 작성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도·도시공 원위원회 심의 대신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다.

제3장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지정 신청

제1절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3-1-1. 시범사업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3-1-2. 시범사업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범위내에서 특정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가시화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 위주로 수립하여야 한다.

3-1-3. 시범사업계획서의 일반적인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 사업계획은 법, 영이 정하는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시범사업계획은 공원녹지가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인문·사회·지역적 특성, 생활권별 균형배분, 녹지축, 접근성, 환경보전, 휴양·오락·재해방지·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다.
- (4) 시범사업계획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도록 하고 대상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3-1-4. 시범사업계획서는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을 달리하여 특색 있게 작성할 수 있다.

제2절 시범사업의 지정 신청

3-2-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범사업계

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범사업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3-2-2.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당해 시·도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4-1.에 따른 지정절차 중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

3-2-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범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대상지 전경사진 등 포함)
- (2) 공원녹지의 확충 및 공원녹지의 수준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호응도 관련 증빙서류
- (4)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역서
- (6) 주민의견 청취 결과서, 시·도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관계 지자체 장의 의견서
- (7)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조례 등 반영 내용) 및 실적 관련 증빙자료
- (8) 기타 당해 시범사업계획의 설명에 필요한 서류

제3절 시범사업계획의 예비평가

3-3-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령 및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적 요건의 적합 여부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제4장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3-3-2. 3-3-1.에 따른 예비평가 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3-3. 시범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평가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 (1) 영 제2조제3항 및 3-2-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적기 착수가 어려운 사업
- (3)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평가가 어려운 사업
- (4) 사업비 항목이 누락되거나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업
- (5) 기존 도시자연공원 중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 (6)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이거나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

3-3-4.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한 때에는 즉시 신청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3-3-5. 3-3-4.에 따른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시범사업계획의 평가 및 시범사업의 지정

제1절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4-1-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지정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1-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시범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범사업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시범사업의 중단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1-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학계·시민단체·연구원 등의 도시공원·녹지분야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4)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4-1-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있어 특정 위원의 평가심의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의 평가심에 해당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5)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6)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평가방법

4-2-1. 제3장제3절에 따른 예비평가 결과 시범사업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도시지역의 사업군과 개발제한구역 안의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시·도별로 평가하되 【별표 2】 평가기준과 【별표 3】 평가분야·평가항목별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2-2. 시범사업의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평가점수는 공통기준에 따른 평가점수와 시범사업 유형별 개별기준에 대한 평가점으로 구분하며, 공통기준 및 유형별 개별기준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700점을 만점으로 한다.
- (2) 공통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는 500점, 개별기준 평가점수는 200점으로 한다.
- (3) 제출된 시범사업계획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책정한다.
- (4) 평가항목별 등급은 5개의 등급으로 하며, 등급간 점수차이 및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평가항목의 배점이 50점인 경우에는 5등급은 10점, 1등급은 50점으로 하고 등급간 점수차이를 10점으로 한다..
 - (나) 평가항목의 배점이 25점인 경우에는 5등급은 5점, 1등급은 25점으로 하고 등급간 점수차이를 5점으로 한다.
 - (다) 평가항목의 배점이 20점인 경우에는 5등급은 4점, 1등급은 20점으로 하고 등급간 점수차이를 4점으로 한다.
- (5) 각 평가항목의 등급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분야별 점수를 산정하고 평가분야별 점수 전체를 합산함으로써

각 사업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6)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 평가결과에서 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대치와 최소치에 해당하는 위원의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 (7) 시범사업계획 평가서의 서식은 【별표 4】와 같다.

제3절 시범사업의 지정

4-3-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을 지정하되, 일반 도시지역의 시범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안의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1) 일반 도시지역의 시범사업은 제2절에 따른 평가 결과 시·도별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들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순으로 지정하되, 연차별로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경우 익년도 시범사업 지정 시에는 전년도에 지정되지 아니한 시·도의 사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다.
- (2) 개발제한구역 안의 시범사업은 제2절에 따른 평가 결과 시·도별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순으로 지정한다.
- (3) (1), (2)에 불구하고 평가 결과 총점의 60%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지정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4-3-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 목적·내용·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시범사업의 지원 및 협조

4-4-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1) 일반 도시지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민간자본유치액 제외)의 50% 범위내로 한다.
- (2) 개발제한구역 안의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소요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민간자본유치액 제외)의 50% 범위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4-2. 시범사업이 지정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3. 시·도지사는 시범사업의 추진에 대한 관련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4-4.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 시범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실천 가능한 사업목표 설정
- (2)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 부담 지방비의 우선 확보
- (3) 3-3-2.에 따른 현지조사
- (4) 5-1-1.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

제5장 시범사업의 사후관리

제1절 사업 추진실적 등 보고

5-1-1.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지정·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년도 추진실적(N년), 지원사항의 활용내역,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당해 연도(N+1년) 사업추진계획 등을 **【별표 5】** 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N+2년)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별표 6】 서식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 추진실적 등 평가

5-2-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전년도(N년)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N+1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평가를 실시한다.

- (1) N년도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N+1년, N+2년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매년)와 사업완료 후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2) 중간평가는 N년도 사업의 진척도,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그 원인분석, 향후대책 강구, N+1년 및 N+2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매년 실시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간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의 조정,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간평가 결과 사업실적의 부진, 약속사항의 불이행 및 여건 변화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중단 및 사업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5) 최종평가는 전체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시범사업의 목적달성도, 도시환경의 균형발전 기여도, 파급효과 및 국민적 관심도 제고 여부 등 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5-2-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평가 결과 사업추진의 효과가 크고 시범사업 시책추진에 모범을 보인 사업에 대하여 우수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이를 홍보, 전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교통 관련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5-2-3.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 등을 종합분석하여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6-1. (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0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09-341호, 2009.8.19.>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지침의 폐지)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도시환경팀-4414, 2006. 10. 3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등 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제863호,2012.8.10.>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훈령의 폐지)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4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15호, 2013.5.15.>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범사업계획서(안) 작성요령<예시> [3-1-4. 관련]

1. 시범사업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목적

나. 추진배경

다.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목표연도 제시(단계별 추진의 경우 단계별 기간)
- 공간적 범위 : 대상지역(위치, 면적 등)
- 내용적 범위
 - 기본구상(기본목표, 계획방향 등)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

라. 추진경위

마. 사업내용

-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시행주체 등

2. 지역 현황 및 특성 분석

- 일반현황 : 대상지역의 자연, 지리적, 인문·사회적 현황 및 생활환경·입지여건 등
-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사업계획 여건 종합분석

3. 시범사업 추진 기본구상

- 공원녹지분야의 발전방향 또는 목표
- 토지이용계획, 계획지표 등

4. 시범사업의 일반현황

- 대상지역 공원녹지의 일반현황
- 유형별 현황
 - 유형별 공원녹지 현황(구성현황, 미집행현황 등 포함)
 - 인구 1인당 공원녹지 조성 현황
 - 1인당 도시공원면적 = 조성된 공원면적/해당 지자체 인구
 - 1인당 녹지면적 = 조성된 녹지면적/해당 지자체 인구
- 최근 5년간 공원녹지 조성실적
 - 지자체의 직접 투자에 의해 조성된 공원녹지에 한정(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것은 제외)
- 장래 수요 및 향후 공원녹지 조성계획
- 공원녹지의 문제점
- 개선방향 또는 발전대책

-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방향(개발의 타당성 분석 포함) 또는 목표

5. 시범사업의 세부계획

- 사업계획의 기본방향
- 세부사업계획
 - 부문별 도시공원사업계획의 개요
 -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토지이용, 동선, 공원녹지시설의 배치,
 - 주차장·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 진출입 교통체계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교통망 계획
 - 재원조달방안
 - 부문별 사업의 영향 및 기대효과
 - 기타 필요한 사항

6. 시범사업의 시행방안

- 소요사업비 추정 및 타당성 분석(비용편익 분석 등)
- 투자계획
 - 재원조달방식, 재원조달계획, 사업우선순위, 단계별 투자계획 등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명시

7. 시범사업의 관리운영계획

- 사업의 관리·운영방안
- 사후평가 등

8. 시범사업의 기대효과

- 지정요청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제시
- 사업추진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시(산출근거 포함)

< 행정사항 >

- 사업대상지의 일반 도시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여부 구분
- 본 계획서(안)은 예시적인 사항이며, 필요한 경우 그 구성과 내용 등을 달리하여 특색있게 작성할 수 있다.
- 1개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A4 용지 50페이지 내외(첨부하는 참고자료 등을 제외한 분량)로 한다.

【별표 2】 평가기준 [4-2-1. 관련]

1. 공통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착안사항)
도시환경의 균형발전기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과급효과	- 도시 전체 공원녹지체계의 기여도 * 운영단계의 지역과급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 - 공원녹지율, 주민이용율 등
	균형발전 필요성	- 사업대상지의 공원녹지 낙후도 - 사업대상지 연접한 지역의 공원녹지 낙후도 - 도시환경의 균형발전 과급효과 - 재정자립도(낮은 지자체 우선 고려)
도시환경의 질 향상	자연·생태·역사·문화 자원의 보전	- 해당 지역의 각종 자연 및 생태, 역사, 문화 관련자원의 활용도 - 도시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향상	- 시범사업이 해당 지역과 연접지역에 미치는 삶의 질적 영향 및 기여도 등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	도시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해당 도시 관련 각종 법정계획 및 정책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 정도 등
	접근성 및 지역자원의 활용성	- 사업대상지역의 접근용이성 및 이용적 가치 - 역사·문화 등 자원과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창의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 사업계획의 다양성·차별성 등
	재무 타당성	- 총사업비 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 재무성 분석방법 및 결과 등의 적정성 등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착안사항)
	투자계획의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계획 및 투자자금 조달계획의 신뢰성 -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건설계획의 적정성 - 당해 지자체의 재정투자 여력 등
	수요추정의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추정을 위한 가정, 지표, 추정방법의 정합성 - 수요추정 결과의 신뢰성 등
	토지확보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유 토지 및 사용가능 국공유지 비율 - 사업해당지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 여부 - 용도지역·지구 등을 고려한 토지개발의 용이성 등 - 계약체결 가능성
시민참여 및 사업추진 의지	정부재원 부담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재정 부담계획 - 중앙정부 재정부담 요청액 등
	주민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 및 참여도 - 지역주민의 초기 계획수립 참여여부 - 민원발생 여부 등
	파트너십 형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관련단체와의 파트너십 관계 -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
	지자체의 공원·녹지 확충 등 사업추진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사항 - 최근 5년간 공원·녹지 조성 사업실적 - 1인당 공원·녹지 면적 -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실적 등 - 사후 관리계획의 적정성

2. 개별기준

가.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주제공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착안사항)
개별특성 및 여건 부합	도시상징공간으로 발전가능성	- 사업대상지의 공간적 여건, 자원 및 입지성 등
	지역특성과 주제와의 부합성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와의 부합성 - 도시 및 지역 이미지와의 부합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 지역자원의 활용성, 이용적 가치, 접근성, 사업주체의 적정성 등
	사업의 효용성	- 지역사회의 기여도, 지자체의 조성의지, 협력단체와의 연계성 등 지역과급효과
	관련시설 배치의 적정성	- 관련시설의 유기적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 여부 등
	사업의 추진여건	- 연차별 관리계획 수립여부 - 재원조달방법 등

나. 소공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착안사항)
개별특성 및 여건 부합	녹화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와의 부합성 - 사업대상지의 토지 확보 가능성 -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가능 충족성
	주민참여도 및 요청	- 공원조성에 대한 주민참여 및 요청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 지역자원의 활용성, 이용적 가치, 접근성, 사업주체의 적정성 등
	사업의 효용성	- 지역사회의 기여도, 지자체의 조성의지, 협력단체와의 연계성 등 지역과급효과
	녹지확보 가능성	- 사업대상지역의 녹화가능면적 - 녹화가능 유형별 녹지확보방안 등
	사업의 추진여건	- 토지매입비의 적정성, 연차별 관리계획 수립여부, 재원조달의 합리성 등

다. 녹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착안사항)
개별특성 및 여건 부합	도시 전체 공원녹지체계에 대한 기여도	- 사업대상지역의 도시전체 공원녹지체계와의 연계성과 순환성 등 - 네트워크로서의 발전가능성 등 - 연계가능한 공원녹지자원의 양적, 질적 수준 * 주변지역 : 직선거리 반경 10km 이내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원녹지체계 와의 부합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 지역자원의 활용성, 이용적 가치, 접근성, 사업주체의 적정성 등
	사업의 효용성	- 지역사회의 기여도, 지자체의 조성의지, 협력단체와의 연계성 등 지역파급효과
	도시공원녹지체계와의 연계성	- 도시전체 및 주변 공원녹지와의 관련성 및 기여도
	사업의 추진여건	- 연차별 관리계획수립여부, 재원조달방법 등의 합리성, 토지확보의 용이성 등

라. 도시녹화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착안사항)
개별특성 및 여건 부합	녹지보전 및 확충의 가능성	- 사업대상지역의 녹화가능면적 및 녹화가능대상 등 - 연계가능한 주변 자연생태자원의 양적, 질적 수준 등 * 주변지역 : 직선거리 반경 10km 이내 영향권
	녹지배치계획과 녹지망 형성 계획과의 상호연계성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원녹지체계와의 관련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 지역자원의 활용성, 이용적 가치, 접근성, 사업주체의 적정성 등
	사업의 효용성	- 지역사회의 기여도, 지자체의 조성의지, 협력단체와의 연계성 등 지역파급효과
	녹지확보의 가능성	- 사업대상지역의 녹화가능면적 - 녹화가능유형별 녹지확보방안 등 -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실적
	사업의 추진여건	- 토지매입비의 적정성, 연차별 관리계획 수립여부, 재원조달방법 등의 합리성, 녹화사업 해당구역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여부 등

마. 기존 도시자연공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착안사항)
개별특성 및 여건 부합	양호한 녹지의 훼손가능성 (보존, 복원 및 이용가능성)	- 사업대상지역의 보존필요성 및 환경적 영향 등 * 주변지역 : 직선거리 반경 10km 이내 영향권
	계약체결 가능성	-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동의여부와 계약체결 내용 등 - 시설설치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 지역자원의 활용성, 이용적 가치, 접근성, 사업주체의 적정성 등
	사업의 효용성	- 지역사회의 기여도, 지자체의 조성의지, 협력단체와의 연계성 등 지역파급효과
	녹지보전의 필요성	- 양호한 녹지의 존재여부 및 질적 수준, 면적 등 - 훼손 가능성이 높은 녹지의 존재여부 및 질적 수준, 면적 등
	사업의 추진여건	- 토지사용동의(또는 승낙), 계약기간중 계약체결 내용의 이행가능성, 연차별 관리계획 수립여부, 재원조달방법 등의 합리성 등

* 현행 도시공원의 종류로 세분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적용

【별표 3】 평가분야·평가항목별 배점 [4-2-1. 관련]

구분	평가분야	점수	평가항목 및 항목별 점수
공통 기준 (500)	도시환경의 균형발전 기여	100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파급효과(50점)
			균형발전 필요성(50점)
	도시환경의 질 향상	100	자연·생태·문화·역사자원의 보전(50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향상(50점)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	100	도시관련 계획과의 연계성(50점)
			접근성 및 지역자원의 활용성(50점)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100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창의성(20점)
			재무 타당성(20점)
			투자계획의 신뢰성(20점)
			수요추정의 신뢰성(20점)
	주민참여 및 사업추진 의지	100	토지확보 용이성(20점)
			정부재정 부담정도(25점)
			주민참여도(25점)
			파트너십 형성 정도(25점)
	지자체의 추진의지(25점)	100	파트너십 형성 정도(25점)
지자체의 추진의지(25점)			
파트너십 형성 정도(25점)			
지자체의 추진의지(25점)			
	소계	500	계

구분	평가분야	점수	평가항목 및 항목별 점수
개 별 기 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200)	개별특성 및 여건 부합	도시상징공간으로의 발전가능성(50점)
			지역특성과 주제와의 부합성(5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25점)
			사업의 효용성(25점)
			주제공원관련시설 배치의 적정성(25점)
	사업의 추진여건(25점)		
	소계	200	계
	소공원 (200)	개별특성 및 여건부합	녹화취약지역 녹화거점으로의 발전가능성(50점)
			주민참여도 및 요청(5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25점)
			사업의 효용성(25점)
			녹지확보가능성(25점)
	사업의 추진여건(25점)		
	소계	200	계
	연결 녹지 (200)	개별특성 및 여건 부합	지역전체 공원녹지체계에 대한 기여도(50점)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부합성(5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25점)	
		사업의 효용성(25점)	
		도시공원·녹지체계와의 연계성(25점)	
사업의 추진여건(25점)			
소계	200	계	

구분		평가분야	점수	평가항목 및 항목별 점수
개 별 기 준	도시 녹화 (200)	개별특성 및 여건 부합	100	녹지보존과 확충의 가능성(50점)
				녹지배치계획과 녹지망 형성계획과의 상호연계성(5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100	사업의 지속가능성(25점)
				사업의 효율성(25점)
				녹지확보의 가능성(25점)
	사업의 추진여건(25점)			
	소계	200	계	
	기존 도시자연 공원 (200)	개별특성 및 여건부합	100	양호한 녹지의 훼손가능성<보존, 복원 및 이용가능성>(50점)
				계약체결의 가능성(5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100	사업의 지속가능성(25점)
				사업의 효율성(25점)
				녹지보전의 필요성(25점)
	사업의 추진여건(25점)			
	소계	200	계	
총 계		700	총 계	

【별표 4】 시범사업계획 평가서 서식[4-2-2.(7) 관련]

< 사업명 : >

구분	평가분야	점수	평가항목	등급	점수	평가의견
공통 기준 (500)	도시환경의 균형발전 기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파급효과			
			균형발전 필요성			
	도시환경의 질 향상		자연·생태·문화·역사자원의 보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향상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		도시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접근성 및 지역자원의 활용성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창의성			
			재무 타당성			
			투자계획의 신뢰성			
			수요추정의 신뢰성			
			토지확보 용이성			
	주민참여 및 사업추진 의지		정부재정 부담정도			
			주민참여도			
			파트너쉽 형성 정도			
			지자체의 추진의지			
	소계		계			

구분	평가분야	점수	평가항목	등급	점수	평가의견
개 별 기 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200)	개별특성 및 여건 부합	도시상징공간으로의 발전가능성			
			지역특성과 주제와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주제공원관련시설 배치의 적정성			
			사업의 추진여건			
	소계		계			
	소공원 (200)	개별특성 및 여건부합	녹화취약지역 녹화거점으로의 발전가능성			
			주민참여도 및 요청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녹지확보가능성			
			사업의 추진여건			
	소계		계			
	연결녹지 (200)	개별특성 및 여건 부합	지역전체 공원녹지체계에 대한 기여도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도시공원·녹지체계와의 연계성						
사업의 추진여건						
소계		계				

구분	평가분야	점수	평가항목	등급	점수	평가의견
개 별 기 준	도시녹화 (200)	개별특성 및 여건 부합	녹지보존과 확충의 가능성			
			녹지배치계획과 녹지망 형성계획과의 상호 연계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녹지확보의 가능성			
	사업의 추진여건					
	소계		계			
	기존 도시자연 공원 (200)	개별특성 및 여건부합	양호한 녹지의 훼손가능성(보존, 복원 및 이용가능성)			
			계약체결의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녹지보전의 필요성			
			사업의 추진여건			
		소계		계		
총 계		총 계				

평가위원 : 성명 (서명)

【별표 5】 시범사업 추진실적 등 제출 서식[5-1-1. 관련]

1. 총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금액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총계							
소계							
000 사업	국고 지방비 기타						
소계							
000 사업	국고 지방비 기타						

- 당초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시행주체 등
- 추진실적
- 향후 계획

2. 전년도(N년)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계획(A)	집행액(B)	집행율 (B/A)	비고
	구분	금액				
총계						
소계						
000 사업	국고 지방비 기타					
소계						
000 사업	국고 지방비 기타					

- 당초 추진계획
- 추진실적<계획 대비 실적(목표달성율) 포함>
- 혁신사례
 - * 설계, 조성 등 과정에서의 혁신기술, 품질확보 등 우수사례
- 부진사유 및 대책(부진사업에 한함)
- 향후 계획

3. 당해 연도(N+1년)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목적

-
-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00년
- 당해 연도 사업비

구분	금액(백만원)	세부산출근거	비 고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타			

- 세부 사업내역(규모) :

다. 추진계획

4. 향후 사업운영 방향 및 투자계획

사업운영방향

○

-

향후 투자계획

【별표 6】 다음 연도(N+2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제출 서식[5-1-2. 관련]

1. 총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금액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총계							
소계							
000 사업	국고 지방비 기타						
소계							
000 사업	국고 지방비 기타						

2.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00년

○ N+2년 사업비

구분	금액(백만원)	세부산출근거	비고
계			
국비 예산요구액			
지방비			
기타			

○ N+2년 세부사업내역(규모)

3. 향후 사업운영 방향 및 투자계획

사업운영방향

○

-

향후 투자계획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정	건설교통부지침 제 473 호,	2007. 2. 1.
폐지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40호,	2009. 8.19.
다법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 863 호,	2012. 8.1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 884 호,	2012. 9.12.
	국토교통부훈령 제 306 호,	2013.11.23.
	국토교통부훈령 제 504 호,	2015. 3.23.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근거

1-2-1.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 제4장 제15조 부터 제25조 까지, 제6장 제35조 부터 제38조 까지 이다.

제2장 도시공원·녹지의 유형

제1절 도시공원의 유형

2-1-1. 도시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을 지닌 생활권공원과 생활권공원 외에 조성되는 공원의 성격에 따라 주제공원으로 분류되며,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되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기타로 세분된다.

(1) 생활권공원

(가)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다)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동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나)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다) 수변공원은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라) 묘지공원은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마) 체육공원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바)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4호에 따른 공원형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사) 기타 공원은 (가) 부터 (바) 까지 이외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다.

제2절 녹지의 유형

2-2-1. 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된다.

- (1)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2)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3)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제3장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제1절 도시공원의 일반적 설치기준

3-1-1. 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갖는 성격과 기능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의 도시공원의 성격에 따른 주요 이용대상을 파악하고 주변지역의 공원 성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1-2. 도시공원은 다음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최 적 합 지	준 적 합 지	부 적 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변 주민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토지 · 근린공원 유치권내 공원시설이 없고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조성효과가 높은 지역 · 나대지로 공원시설화가 가능한 토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도로에 접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한 토지 · 주변에 놀이터, 근린공원이 있는 토지 · 주변의 인구밀도가 낮은 토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타용도로 이미 점유되어 있는 토지 · 급경사지나 절개지 등으로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토지 등

3-1-3.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거지에 위치하는 공원이므로 공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3-1-4. 어린이공원과 같은 소규모의 공원은 철도, 주요 도로 등에 의하여 유치권역의 일부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의 유치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백지역이 어린이공원 설치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한다.

3-1-5.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할 규모는 제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유형별 규모기준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면적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2)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면적규모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수립기준

3-2-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일반적인 수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공원은 인구수와 조성된 공원의 위치 및 공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2)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인접해 있는 시·군의 공원의 위치를 감안하는 등 광역적인 측면도 고려한다. 광역적 측면에서의 공원조성은 연결녹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3) 도시공원의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이용대상자인 주민의 성별, 연령, 선호사항 등을 주민의식조사 또는 인터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 (4)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공원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개발 목표와 방향이 달라야 하며, 각 공원이 가져야 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각각의 공원이 갖는 기능에 따른 시설물과 동선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5) 인근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공원의 경우 지역주민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6) 공원시설부지는 가능한 생태적 기능(자연순환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한다.
- (7) 도시공원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수질, 토양, 동·식물과 같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공원조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녹지자연도 7등급 중 과도하게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생태계보전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습지보호구역 등은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나)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등 본래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수질 및 유로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하천 또는 수로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8) 공원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소음, 주차문제 등에 대한 영향과 공원조성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조사하여 환경 또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되도록 한다.
- (9)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10)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제3절 도시공원시설의 안전기준

3-3-1. 도시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 (1)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한다.
- (2)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며, 이용 동선·유희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3) 공원시설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계획·유지관리·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장애발견, 제거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보수 등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안전점검은 유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써 초기 설치 및 작동과 관련하여 제조·시공자가 행하는 초기점검(시설 설치완료 후 일정기간 시설설치업자가 하는 점검), 공원관리자가 행하는 일상점검(관리자가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 및 전문기술자에 의한 정기점검(전문기술자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정밀점검(필요시 관리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전문기술자가 행하는 점검)으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 (6)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7)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관리자나 공원관리청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 (8) 사고발생 후 대응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후조치,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9) 사고에 대하여는 발생 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행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 (10)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 상황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이나 공원시설물의 관계자가 공유·교환하도록 한다.
- (11)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 (12) 도시공원은 청소, 시설물 보수 등과 같은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며, 화단, 수목 등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13) 도시공원 안에서 각종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후 진행하도록 하고, 행사로 인하여 공원시설 및 녹화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는 쓰레기 등에 대한 자체 청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사 관련 시설물은 즉시 철거하도록 한다.

제4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조성·유지관리 기준

3-4-1.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자연적 감시 : 내·외부에서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조성·관리

- (2) 접근통제 : 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
- (3) 영역성 강화 :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배치
- (4) 활용성 증대 :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배치
- (5) 유지관리 : 안전한 공원환경의 지속적 유지를 고려한 자재선정 및 디자인 적용과 운영·관리

3-4-2.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계획·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1) 공원계획은 식재수목이나 시설물이 이용자의 시야를 가능한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2) 공원의 출입구는 도로나 주변의 건물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용자의 동선을 명료하게 하여 이용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 (3) 공원의 경계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난간이나 투시형 펜스를 사용하고, 생울타리로 공원경계를 구분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4) 수목은 교목과 관목이 주변의 시야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목성장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관리하여야 한다.
- (5) 수목은 항상 정돈·관리되어야 하고 이용자에게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숨을 수 있는 공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배식하여야 한다.
- (6) 공원에 설치하는 안내시설물은 통행이 잦은 공원의 출입구 주변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요소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에서 가까운 장소 등 주위로부터 시야가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구는 다른 공공장소에서 잘 보이도록 배치하며, 화장실 입구 부근 및 내부는 사람의 얼굴·행동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8) 관리사무소는 이용자의 행위를 감시하기에 적절한 공원출입구 등에 배치하고 감시가 용이한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한다.
- (9) 공원의 의자 등 휴게시설은 가로등·보행등이 설치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사회적 일탈행위 등의 예방 및 교통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10) 의자, 쓰레기통, 표지판 등 공원시설물은 파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11) 조명은 도시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배치를 하되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
 - (가)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 (나) 수목이나 공원시설물 등에 의하여 조명시설이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 (다) 공원입구, 통로, 주차장, 표지판, 주요활동구역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조명시설은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파손 예방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1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공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고, 야간활용을 위하여 조명도 설치하여야 한다.
- (1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제1절 생활권 공원

4-1-1. 소공원

(1) 소공원은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의 자투리 땅 등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설치 위치 및 성격에 따라 근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근린소공원은 근린생활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정원 개념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및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써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민이 도보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한다.

① 도시형 근린소공원 : 기존 도시지역 내 시가지 혹은 신도시 주거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터, 나대지 또는 녹지대 등을 활용하여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② 전원형 근린소공원 : 기존 도시지역 외곽지역 혹은 군단위 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써 마을 보호수나 정자목과 같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소공원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나) 도심소공원은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지역에 거주자 이외에 그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공간 또는 녹지공간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한다.

① 광장형 도심소공원 : 고층 건물 주변의 자연공간으로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며, 주로 간선도로변의 고층 건물군 사이에 조성되는 것으로 시설중심의 공원이다.

② 녹지형 도심소공원 : 도시지역 내 이용의 측면보다 녹지로서 보는 측면이 강조되는 소공원으로서 화초류 또는 보행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수경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공원이다.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가) 소공원은 도심이나 주거지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하도록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수, 정자목을 활용하거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터 등의 소규모 토지도 소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써 설치규모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근린공원의 설치 규모를 감안하여 1만㎡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나)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중 긴의자, 운동시설 중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전화실에 한하며, 성별·연령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소공원에는 필수적인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소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5% 이내로 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마) 소공원은 시설보다는 녹지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 높이가 4m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1-2. 어린이공원

- (1) 어린이공원은 근린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공간으로서 근린주구의 공원이다.
-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 (가) 어린이공원은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공원이 아니라 지역성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높이도록 조성한다.
 - (나) 어린이의 생활 및 놀이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시설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풍요로운 공간이 되도록 한다.
 - (다) 어린이공원은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게 되나 어린이 이외에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등 가족

이나 지역주민의 공간도 고려하도록 한다.

- (라) 어린이의 보호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공간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마) 어린이공원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변으로부터 쉽게 관찰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어린이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치거리는 250m 이하, 규모는 1,500m² 이상으로 한다.
- (사) 어린이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5% 이내로 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60% 이하로 한다.
- (아)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이며,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 (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인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차) 어린이공원은 획일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설치하기 보다는 잔디밭, 레크레이션 장소 등 도시지역 안에서 어린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한다.
- (카) 어린이공원의 공원시설은 대상연령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령(유아, 유년, 소년)별 이용자간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공간적인 구분을 둘 수 있다.
- (타) 어린이를 위한 공원시설은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조성되어야 하며, 놀이시설의 경우 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파)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하) 어린이공원은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명시설, 표지판 등과 같은 시설의 설치·관리가 필요하다.

4-1-3. 근린공원

(1) 근린공원은 이용거리 등에 따라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주로 인근(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나)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로 도보권 안(반경 1,000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라) 광역권 근린공원은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가) 근린공원은 공원별로 특성화하여 주변의 유사공원과 차별화를 이루도록 한다.

(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치거리는 500m 이하, 설치 규모는 1만^m 이상으로 한다.

(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치거리는 1,000m 이하, 설치 규모는 3만^m 이상으로 한다.

(라)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거리에 제한은 없으나 설치규모는 10만^m 이상으로 한다.

(마) 광역권 근린공원은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거리에 제한은 없으나 설치규모는 100만^m 이상으로 한다.

(바) 근린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① 3만^m 미만인 경우 : 20/100

② 3만^m 이상 10만^m 미만인 경우 : 15/100

③ 10만^m 이상인 경우 : 10/100

- (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위치는 자연식생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한다.
- (아) 근린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는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 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거 인근 또는 근린에 설치하는 공원이므로 근린 거주자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휴양시설·조경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위주로 설치할 수 있다.
- (자) 이용대상을 주변지역 혹은 타 도시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게 되는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 광역권 근린공원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 (차) 근린공원 중 택지개발지구 안의 산림에 설치하는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근린공원 시설물을 최소화·집약화하여 설치하여 공원이용으로부터 원래의 식생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카)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제2절 주제공원

4-2-1. 역사공원

- (1)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 (2) 역사공원의 설치기준 등
 - (가) 역사공원은 기존의 문화재가 있는 지역 이외에도 문화재가 위치한 외곽 일정지역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역사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의 핵심적인 역사 소재를 다루는 수준과 방법을 보존, 보전, 복원 여부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①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공원은 문화유산의 현재 상태의 유지·보호에 중점을 두어 조성하되, 유적이거나 유물 등 문화유산의 자체가 변하지 않더라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공원은 문화유산의 급격한 변화와 훼손을 방지하되 자연스러운 변화는 허용하며, 시간과 함께 변해가는 모습 자체를 역사성으로 인정한다.

③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공원은 원형이 훼손된 부분을 다시 만들어 넣는 것으로서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다) 유적지 중심의 역사공원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적지나 명승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원으로서 유적지의 보존·활용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라) 역사공원은 관계기관·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하에 설치·보전·정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역사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문화시설·문화재 등과 같은 주요 시설물의 설치 이외에 이를 이용객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역사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사) 역사공원에는 역사자원의 보호·관람·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아)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2. 문화공원

(1)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2) 문화공원의 설치기준 등

(가) 문화공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 지역축제, 전통문화체험, 자연, 예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한 지역문화활동 등을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은 전통문화나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 등 역사공원과 유사한 소재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지역의 문화산업, 문화와 관련된 인물, 환경적 특성이 생활문화에 반영된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조성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활동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전통문화의 보급 및 전수 등의 활동을 위한 공원으로서 문예회관, 공연장 및 전시관 등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문화공원은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성, 문화의 우수성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다) 문화공원은 일회성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행사장이 아니므로 상설전시, 특별전시 등과 같이 연중 이용객에게 문화공원으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문화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관련 문화시설이나 문화자원에 따라 소공원 규모에서부터 기존 광역권 근린공원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다.

(마) 문화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바) 문화공원에는 문화자원의 보호·관람·이용·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사) 문화공원 조성시에는 문화시설, 문화자원 및 이와 관련된 시설만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객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도 확보되도록 한다.

- (아) 공연장,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특성 및 기능, 이용객의 수요 등을 파악한 후 적정규모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완충녹지 공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자)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3. 수변공원

- (1) 수변공원은 하천, 호수, 저수지, 댐, 바다 등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 (가) 수변공원은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나) 하천, 호수 등과 같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조성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가능한 정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다)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어 수변공원을 조성하거나 복개된 하천 등을 개방하여 복원 개념의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 (라) 갯벌, 습지 등에 조성되는 수변공원의 경우 생물종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이용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그 외 보전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다.
 - (마)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하천범람 주기를 확인하고 범람의 위험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위험을 느끼는 곳에는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기존의 하천의 흐름 등을 바꾸지 아니하도록 한다.
 - (바) 수변공원은 유치거리·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사) 수변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아) 수변공원에는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휴양시설, 운동시설,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편의시설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 ① 가능한 한 넓은 수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수변의 경관을 최대한 활용한다.
- ② 이용자들이 수변공간의 개방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휴식을 위한 휴게소,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물과 접촉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 ④ 일반적으로 수변공간은 선형으로 조성되므로 물을 바라보며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수변공간은 레저나 산책, 운동 등의 동적인 활동 이외에 수변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정적인 활동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공원시설의 설치시에는 하천·호수 등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녹지대를 설치하거나 오염원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함께 설치되도록 한다.
- ⑦ 수질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4. 묘지공원

(1) 묘지공원의 설치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묘지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0만 m^2 이상으로 한다.
- (다) 묘지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상으로 한다.
- (라) 묘지공원에는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 (마)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5. 체육공원

- (1)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 (2) 체육공원의 설치기준 등
 - (가)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 m^2 이상으로 한다.
 - (다) 체육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 ① 3만 m^2 미만인 경우 : 20/100
 - ② 3만 m^2 이상 10만 m^2 미만인 경우 : 15/100
 - ③ 10만 m^2 이상인 경우 : 10/100
 - (라)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에 한한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마)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6. 도시농업공원

(1)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2)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 등 도시농업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도시농업공원은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간이므로 공공재 성격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시농업공원은 설치기준·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라) 도시텃밭은 생태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도시텃밭의 설치로 인한 도시농업공원의 생태적 기능약화와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바) 동절기 및 휴경기간에는 도시텃밭에 짚단 또는 인공피복재 설치 등을 통하여 공원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도시농업공원에는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아)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7. 기타 공원

- (1) 기타 공원은 4-2-1. 부터 4-2-6. 까지에 따른 공원 이외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이다.
-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 (가) 기타 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 (나) 기타 공원에는 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하고,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 (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제5장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제1절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 5-1-1.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복원·개선하여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2-1. 부터 4-3-3-3. 까지에 따라 계획·설치한다.
- 5-1-2.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써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제2절 연결녹지

5-2-1.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녹지와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녹도로서의 기능 등을 하는 선형의 녹지로서 크게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와 녹지의 연결 및 쾌적한 보행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도로 구분할 수 있다.

- (1) 생태통로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는 소생물의 이동통로 및 서식지 제공의 역할을 하며, 주변의 녹지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녹도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한다.

5-2-2. 연결녹지의 설치기준

- (1) 연결녹지는 공원, 녹지, 광장 등을 녹도 및 녹지 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공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 (2) 연결녹지는 가로망체계와 함께 지역내 공간구조의 형태를 결정하는 골격이 되도록 한다.
- (3) 연결녹지의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생태통로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나 서식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 (4) 생태통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가 선정되면 보행중심의 녹도 설치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변 녹지대와 유기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녹도의 배치가 도시 전역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 (5)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의 경우 보행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차폐할 수 있으며, 녹도의 폭 확장 및 체계적인 배치를 위하여 차량통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6) 기존의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수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수목은 최대한 보전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5-2-3. 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조성 세부기준

- (1) 폭은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이상으로 한다.
- (2) 연결녹지 지역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목표종의 이동특성 및 서식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요소들을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을 설정하여야 한다.
- (3) 폭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개천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를 함께 이용한다. 특히, 생태이동통로로써의 연결녹지는 하천 등의 수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4) 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 등의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5) 공원, 주변 산림, 완충녹지대 등과 같이 면적인 녹지공간과의 연결을 통하여 연결녹지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한다.
- (6)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류 등을 다층식으로 식재하여 녹지대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수종은 주변지역 산림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7) 다층식 식재설계시 생태학적 지위, 천이 등과 같은 생태학적인 고려가 된 식재계획이 되도록 한다.

5-2-4.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조성 세부기준

- (1) 폭은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이상으로 한다.
- (2) 녹지의 연결 및 쾌적한 보행공간을 위한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의 확보, 사람의 통행, 자전거의 통행 등을 고려하여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 (3) 아파트 단지 등 방음, 차폐 등을 목적으로 한 완충녹지대와 연계하여 연결녹지의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4) 공원, 주변 산림, 완충녹지대 등과 같이 면적인 녹지공간과의 연결을 통하여 연결녹지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한다.
- (5)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연결녹지의 경우 포장재는 자연순환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재 또는 친환경소재 등을 이용하도

록 하며,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답압에 강한 식물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6) 보행 및 자전거 도로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 등의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7)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한 안전 시거 확보를 위하여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가로수와 같이 연결녹지대 안에 식재되어 있는 가지 등이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한 시야를 가려서는 아니된다. 부득이한 경우 전정 등과 관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염화칼슘, 모래보관함 등 보도내 적치되어 있는 시설이 통행에 방해되어서는 아니된다.
- (8)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류 등을 이용한 다층적 식재를 통하여 녹지공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지대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 경우 수종은 주변 지역의 수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제6장 행정사항

6-1. (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10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09-340호, 2009.8.19.>

-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지침의 폐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도시환경팀-473, 2007. 2. 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등 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제863호,2012.8.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4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 <제884호, 2012.9.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도시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지침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조성·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시설 등의 보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306호, 2013.11.23.>

이 지침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4호, 2015. 3.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39호, 2009. 8.1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 863 호, 2012. 8.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 다. 지적법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하일 것
 -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이하일 것
 -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쇠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

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 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마목의 단서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시장·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시장·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이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유효기간)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0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09-339호, 2009.8.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도시환경팀-1929, 2005.12.23.)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등 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제863호,2012.8.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39호)은 이를 폐지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2011-718호, 2011. 7.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4-390호, 2014. 6.30.
국토교통부훈령 제 494 호, 2015. 2.24.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2)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말한다.
- (3) “비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비공원시설부지”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를 말한다.
- (5) “민간공원추진자”란 특례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6) “특례사업”란 법 제21조의2의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이하 “행위특례”라 한다)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절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 1-3-1. 이 지침은 법 제21조의2의 도시공원부지에서 행위특례에 따라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3-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행위특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장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

제1절 기본방향

- 2-1-1. 시장·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시공원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
- 2-1-2.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성되는 도시공원은 공공기여와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통한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2-1-3.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특례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2절 행위특례 적용

2-2-1.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2-2. 행위특례는 도시공원 전체를 조성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을 5만제곱미터(국공유지 제외) 이상으로 분할하여 행위특례를 적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후 잔여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제3절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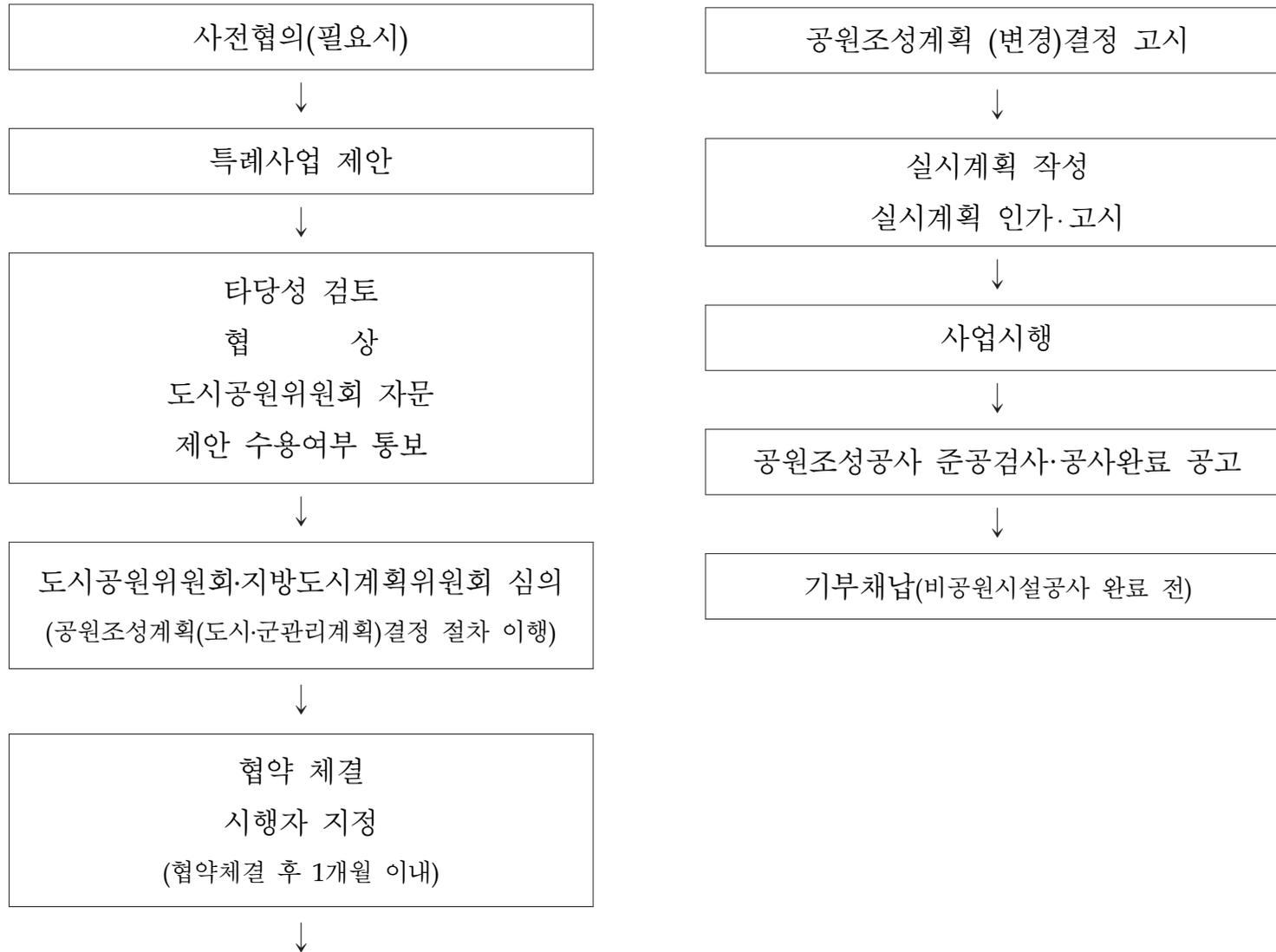
2-3-1. 특례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2-3-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은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정한다.

제3장 제안에 의한 행위특례사업 시행절차

제1절 특례사업의 절차

3-1-1. 제안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2절 사전협의

3-2-1.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는 특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2-2.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간의 사전협의 내용은 특레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시기 등 특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3-2-3.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제안서 제출

3-3-1.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행위특레에 따라 특레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5) 사업의 총비용(별표 1), 사업의 총수익(별표 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 (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 (8)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협상

- 3-4-1.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 3-4-2. 협상기간은 6개월로 하며 협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안의 수용여부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4-3. 시장·군수는 제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 3-4-4. 시장·군수는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5절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5-1.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시설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부지의 용도지역,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절 협약 및 시행자 지정

3-6-1. 시장·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변경)되었을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법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3-6-2. 특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협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하여야 한다.

3-6-3. 협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의 개요
-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3)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
- (4)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 (5)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시장·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8) 협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 (9)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
-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11) 협약의 변경, 협약의 효력
- (12) 기타 행위특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6-4.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협의에 의하여 3-6-3.의 협약사항의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절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변경) 고시

3-7-1. 시장·군수는 특례사업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때에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8절 실시계획 작성 등

3-8-1.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3-8-2.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시장·군수는 공고 및 공람 등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8-4.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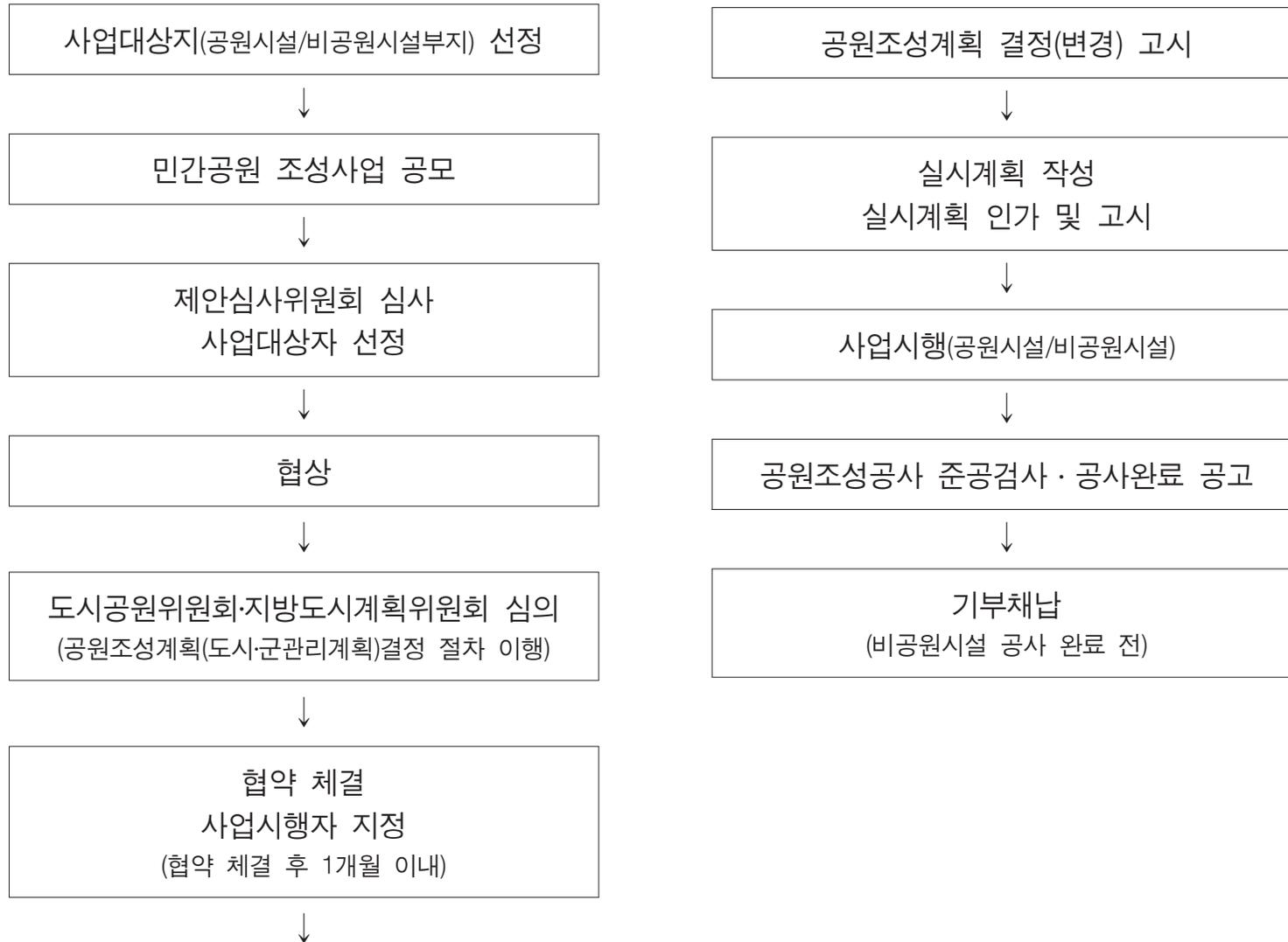
3-8-5.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8-6. 시장·군수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3-8-7.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

제1절 공모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2절 대상지 선정 및 공모

4-2-1. 시장·군수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 (3)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 최소한의 조건(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 한정한다)

4-2-2. 시장·군수는 공모안에 대하여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사업대상자 선정 및 협상

4-3-1. 공모에 응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 (3) 사업의 총비용(별표1), 사업의 총수익(별표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 (4)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3-2. 시장·군수는 공모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3-3. 제안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건축·회계·법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3-4.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4-3-5. 특례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상 이후의 절차는 제3장 제5절부터 제8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특례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제1절 사업이행의 보증

5-1-1. 시장·군수는 특례사업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5-1-2. 시장·군수는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제2절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

5-2-1. 시장·군수는 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2-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 받은 민간공원추진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협약서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협약의 변경

5-3-1. 협약당사자인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1) 사업기간의 변경
- (2) 공원시설,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변경
- (3) 시장·군수 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3-2. 협약당사자인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5-3-1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에 그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절 기부채납

5-4-1. 민간공원추진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을 시장·군수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4-2. 기부채납 시기 등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비공원시설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5-5-1. 시장·군수는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718호, 2011.7.1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390호, 2014.6.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는 지침 발령일 이후에 시행되는 공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94호, 2015.2.2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 사업의 총비용

1. 사업토지 가격 : ○○○.○억원

○ 공원시설 토지가격 : ○○○.○억원

위치	소유자	필지수	면적	추정가격
○○시 ○○동	○○인	○○필지	○○○m ²	○○○.○억원

○ 비공원시설 토지가격 : ○○○.○억원

위치	소유자	필지수	면적	추정가격
○○시 ○○동	○○인	○○필지	○○○m ²	○○○.○억원

2. 공원시설 사업비 : ○○○.○억원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m ²)		사업비
		부지면적	시설면적	
총계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그 밖의 시설				

3. 비공원시설 사업비 : ○○○.○억원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구분 작성

4. 총 계(①+②+③) : ○○○.○억원

※ 비교 : 총비용 산출 세부내역서(토지 추정가격, 공원시설
· 비공원시설 사업비 내역 등) 첨부

[별표 2]

본 사업의 총수익

1. 건축물의 종류별(①) 비공원시설 분양(매각)수입 : ○○○.○억원

2. 건축물의 종류별(②) 비공원시설 분양(매각)수입 : ○○○.○억원

3. 건축물의 종류별(③) 비공원시설 분양(매각)수입 : ○○○.○억원

4. 총 계(①+②+③) : ○○○.○억원

※ 비교 : 총수익은 비공원시설 종류·규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9호, 2007. 2. 6.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86호, 2009. 8.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24호, 2011. 4. 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2012. 8.1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60호, 2012.11.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39호, 2013. 9.17.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의 구역전환에 따른 관리기준을 정하고, 법 제28조 및 영 제32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동 구역내 취락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지침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의 기준, 절차와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구역 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 및 취락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1-2-2.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와 중복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기준

제1절 지정의 일반원칙

2-1-1. 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1-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녹지 체계 및 도시민의 여가·휴양 수요와 연계성을 갖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절 지정 기준

2-2-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 2-1>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표 2-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항 목	기 준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① 동식물의 서식처 또는 생육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자연의 보호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양호한 소생태계(비오톱)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③ ① 또는 ②의 조건을 가진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양호한 생태계 또는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
양호한 경관의 보호	①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한(지형 등이 뛰어난 풍치 또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지역 ② 해당 도시 또는 지역에서 주요한 조망대상 또는 상징적 경관이 되는 지역 ③ 지역의 역사 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문화재 또는 유적 및 유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관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의 확보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산 또는 도시민이 자연과의 접촉의 장이 되는 녹지 ② 지역주민의 건전한 심신의 유지 및 증진에 관계되는 녹지로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보전할 만한 녹지축이나 거점 등으로 계획된 지역

2-2-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할 때에는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생태·자연도, 임상도, 녹지자연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1)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임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지역,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등급의 지역은 우선적으로 구역 지정의 대상이 된다.
- (2)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나 현장조사에 의하여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지역 또는 구역은 가능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중복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4) 자연의 보호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는 지역, 양호한 소생태계(「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말한다)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또는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양호한 식생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2-2-3. 경관의 자원적 가치는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하거나(지형 등이 뛰어난 풍치 또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거나, 지역에서 주요한 조망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도시 또는 지역의 상징적 경관이 되는 지역, 지역의 역사성 등을 지닌 문화재 또는 유적, 유물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2-4.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 도시민의 공원이용권 및 균형적인 배치를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지역이

해당될 수 있다.

- (1)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녹지 또는 도시민이 자연과의 접촉의 장이 되는 녹지
- (2) 지역주민의 건전한 심신의 유지 및 증진에 관계되는 녹지로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서 보전할 만한 녹지축이나 거점 등으로 계획된 지역 등

제3절 경계설정 기준

2-3-1.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지형적 특성, 주변의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현황, 행정구역 경계 및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일정 규모의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 및 영향권(완충지대를 의미함)을 포함하여 설정하며, 지형적인 특성(예시 : 등고선이나 능선, 하천수계, 골짜기 등) 및 행정구역 경계를 고려하여 심한 요철구간이나 심한 경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공원·녹지의 유무, 주거지 등) 및 토지소유현황(국·공유지, 사유지 등)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의 존재 유무를 고려하여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기준

2-4-1. 시·도지사는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 상실

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부를 변경(해제)할 수 있다.

- (1) 2-2-2.에 의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자연적·지리적 특성 등의 사유로 도시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도로(중로2류 15m 이상)·철도·하천개수(지방2급 하천 이상)로 인하여 발생한 2천m² 미만(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3천m²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변경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이 경우 해제면적은 전체 구역면적의 1/100을 초과할 수 없다).
- (4)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2-4-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은 당해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4-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을 위하여 환경성 검토를 통해 국토환경성평가도 3등급~5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임상도 3등급~1등급, 녹지자연도 6등급~0등급을 이용등급으로 하고, 이용등급을 대상으로 변경(해제)하도록 한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지를 변경(해제)할 수 있다.

2-4-4. 이용등급은 국토환경성평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녹지자연도 등을 활용하여 상위등급을 우선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한다.

2-4-5. 시·도지사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5절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기준

2-5-1. 법 시행 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공원 조성이 불필요하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한다.
- (2) 기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생활권공원이나 주제공원 등으로 변경(이 경우 규칙 **【별표 4】**에 의한 공원종류별 공원시설부지면적을 고려하여 공원면적을 결정)한다.
- (3)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부적절하게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2-6-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포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절차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되,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그 결정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3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등

3-1.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27조 및 영 제26조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3-2.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매수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시공원 등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등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3.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체력단련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법 시행 이전에 기존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시설구역 또는 시설구역 외에 공원시설로 설치된 운동시설 및 체력단련과 관계되는 시설은 법 제27조 및 영 제26조 별표 2(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제4호에 의한 체력단련시설로 본다.
- (2) 영 제26조 별표2 제4호의 체력단련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3-1>과 같다.

<표 3-1> 체력단련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세부시설	설치기준	규모
등산로 (산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도보이용을 위한 시설로 등산로 형태와 산책로 형태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 경사가 시작되는 등산로 입구부터 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등산자를 위한 시설로 등산을 위한 안내시설 필요 - 산책로 : 수림 내부, 초원 등 자연풍경을 관찰하고 산책할 수 있는 보도로 장애자의 이용이나 관리용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고려 ○ 등산로는 산정상부에서 산록부 방향으로, 동일 사면상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진행 ○ 원칙적으로 구역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고도의 등산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인 등산로로 계획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구역 안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노선을 선정 ○ 등산로(산책로) 개설로 서식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등산로 : 1.0~2.0m 산책로 : 1.5~2.5m

세부시설	설치기준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의 시점, 종점은 최단거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흥미지점, 전망지점 등을 연결 ○ 유수에 의한 침식방지, 식생보전,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15%(9°) 이상의 경사지에 계단을 설치하고, 그 이하라도 토질 등에 따라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도 설치 ○ 식생보호 및 최저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되, 울타리는 설치장소, 재료, 색채, 구조를 고려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 ○ 산책로와 등산로 주변에는 휴게시설(쉼터, 정자, 벤치 등) 및 체력단련시설, 안내판·이정표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어린이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자연공원구역 진입광장, 주거지 근처에 배치하여 어린이의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시야를 확보 ○ 네트조합놀이대, 그네 등의 놀이기구와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 	500m ² 이내
체력단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로, 광장, 약수터등과 같이 설치하거나 인근에 설치 ○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오금펴기 등의 운동시설과 벤치 등의 휴게시설을 구비 	
간이휴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동선의 결절점, 산책로 주변, 광장 및 운동시설 주변에 설치하고, 파고라·쉼터·야외 탁자·벤치 등을 설치 ○ 임간휴게소 : 공간이 협소하거나 급경사로 인하여 등산객의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나 휴식·조망을 위하여 등산로 주변이 훼손되는 지역에 소규모의 휴식공간을 설치 ○ 평의자는 관리를 고려하여 폭이 넓은 각재를 사용하고 그늘시렁 하부나 휴식공간에 설치 ○ 등의자는 안식각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조망이 양호하고 장시간 휴식이 필요한 곳에 설치 ○ 파고라·쉼터는 광장, 휴식공간 등 보행의 집·분산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 ○ 특히, 평의자·파고라는 휴게공간, 광장 외주부에 설치하고 통행동선을 고려하여 배치 	33m ² 이하

- 3-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녹지의 보전 및 이용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5. 시장·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양호한 식생을 보전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도한 이용에 따른 답압 등으로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일정기간 동안 등산로의 일부구간 또는 전구간의 출입제한을 목적으로 등산로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6. 시장·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생태계의 학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 및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1) 생태계 학습을 위하여 생태적 가치와 특성을 일반 도시민과 학생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탐방객 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생태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2) 등산로의 복원, 훼손지 나무심기, 자연보전지역 훼손 감시활동, 귀화식물 제거활동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단체나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3) 시장·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경관 특성을 살려 계절별 경관 포인트를 설정하여 경관 해설판을 설치할 수 있고, 조망위치에 따라 전망대를 설치하여 촬영 등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취락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특례

제1절 호수기준

- 4-1-1. 취락지구 지정의 호수기준은 1만m² 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으로 하며, 자연환경의 보호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 및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주택호수의 세부산정기준

4-2-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호수를 1호수로 산정한다.

- (1)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다)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 (2)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주택(「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

4-2-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절 경계설정 기준

4-3-1. 도시자연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2)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
- (3)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 등급의 토지가 취락의 외곽에 위치할 경우에는 지구에서 제외하며, 취락의 내부에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에는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로 보존한다.
- (4) 취락지구의 경계선의 형상은 가급적 장방형, 원형, 타원형 등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와 세로의 비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경계선을 설정하도록 한다.

제4절 지정절차

4-4-1.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절차에 의한다.

제5절 행위제한의 특례

4-5-1.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1)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을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동호 아목을 제외한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표 2-5).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

(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m² 이하 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m²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2) 영 제33조 별표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다음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나) 용적률은 10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표 2-5>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구 분	허 가 조 건
허용 가능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일 것. 다만,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 인접토지를 이용하여 200㎡ 이내 주차장설치가 가능하며,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 변경시 주차장 부지는 원래 지목으로 환원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 것 ○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유사한 것 ○ 지역아동센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외대상 건축물 :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5장 행정사항

5-1.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9-686호, 2009.8.19.>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24호, 2011.4.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2012-517호, 2012.8.1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760호, 2012.11.8.>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539호, 2013.9.17.>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집

| 발행처 |

국 토 교 통 부
녹 색 도 시 과

| 발행일 |

2015. 3

| 인쇄처 |

휘문인쇄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전화상담

TEL : 044)201-3124 FAX : 044)201-5506